

# 유럽연합-한국 인권담화: 서유럽, 동유럽과 그 너머에서 인권을 증진한 경험

European-Korean Human Rights Dialogue: The experience of promoting human rights in Western Europe, Eastern Europe and beyond.

## 부제: 북한 인권문제, UN 과 국제사회를 통한 해법 논의

일시: 2012 년 4 월 25 일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 층 배움터 Date: April 25(Wed), 2012 Venue: NHRCK Bldg. 8F 공동주관: (사)성통만사, 한스 자이델 재단 Co-organized by: PSCORE, Hanns-Seidel-Foundation

## Program

### - First session -

1. Opening statement: Youngil Kim (Executive director)

#### 2. Congratulatory address

#### 3. Video screening

· Successful story about OTPOR movement in Serbia

#### 4. Keynote speech

· Sinisa Sikman (CANVAS - Program officer/Trainer)

#### 5. Coffee break

### - Second session -

#### 6. First discussion

- · Moderator : Jhe Seong Ho (Formere Human rights Ambassador of MOFAT)
- · Alisdair Walker (British Embassy Seoul, Political Counsellor)
- · Jack Rendler (Amnesty International USA)
- · Discussant : PSCORE 1 Youngil Kim (Executive director)
- · Discussant : PSCORE 2 Bada Nam (Secretary General)
- · Discussant : PSCORE 3 Soo-Kyeong Shin (Former Intern)

#### 7. Coffee Break

#### 8. Round table session

#### 9. Floor discussion

#### 10. Concluding statements and Photo time

## 워크샵 진행 순서

#### -1부-

1. 개 회사: 김영일 대표 (성통만사대표)

#### 2. 축 사

3. 동영상 상영·유럽 OTPOR 운동에 대한 다큐멘타리 요약본 (한글자막)

#### 4. 기조연설

· Sinisa Sikman (CANVAS - Programme officer/Trainer)

5. 휴식/정리

- 2 부 -

#### 6.1 차 토론

·사회자 :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 전 외교부 인권대사 ·발표자 1 : 알리스다 워커 (주한 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

· 발표자 2 : 잭 렌들러 (국제 앰네스티 북한전담관)

·토론자 1 : 김영일 (성통만사 대표)

·토론자 2: 남바다 (성통만사 사무국장)

·토론자 3: 신수경 (성통만사 전 인턴)

7. Coffee Break

#### 8.2 차 토론

#### 9. 플로어토론

· 참석자 질의응답 및 코멘트

10. 폐회 및 사진촬영

## Contents

### Keynote speech

· Sinisa Sikman (CANVAS - Programme officer/Trainer)	1
Non-violent Struggle: Lessons from Serbia applied i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scussion	

· Alisdair Walker (British Embassy Seoul, Political Counselor)	47
UK Government's approach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Experience	
from working in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s Human Rights	
Department	
· Jack Rendler (Amnesty International USA)	57
How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consultative status in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can use their influenc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Korean people	
	00
· Discussant : PSCORE 1 Youngil Kim (Executive director)	89
· Discussant : PSCORE 2 Bada Nam (Secretary General)	94
· Discussant : PSCORE 3 Soo-Kyeong Shin (Former Intern)	100

### 목 차

### 기조연설

·시니사 식맨 (캔바스 – 프로그램 담당관 / 지도관) 23 비폭력 저항: 세르비아의 영향을 받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로부터의 교훈

#### 발표 및 토론

- · 발표 1 : 알리스데어 워커 (영국대사관 참사관) 50 인권신장을 위한 영국정부의 입장과 영국 외무부 인권과에서의 경험
- · 발표 2 : 잭 랜들러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북한담당관) 69 UN 경제사회이사회 자문기구인 NGO 가 인권개선을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 · 토론 1 : 성통만사 김영일 대표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기대하며
- ·토론2:성통만사 남바다 사무국장 성통만사의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 제시된 발표자들의 전략을

기준으로

·토론 3 : 성통만사 신수경 전 인턴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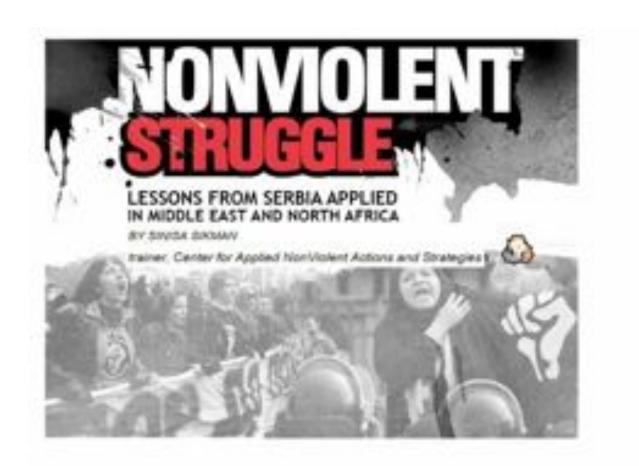
PSCORE 의 방향성을 고민하며, '인권'을 다시 묻다

94

## <기조연설>

## Non-Violent Struggle: Lessons from Serbia applied in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Sinisa Sikman / CANVAS



#### Slide 1

After OTPOR managed to overthrow Serbian dictator Slobodan Milosevic, many different groups from all over the world started to contact us and to ask us to share our knowledge and experience. Founders of Centre for Applied Non-Violent Action and Strategies (or shortly CANVAS) were part of the team that organized OTPOR and had idea to create something which would be the essence of nonviolent struggle.

CANVAS is a non-profit,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network, oriented to educational work related to strategic nonviolent conflict.

Our mission now is to reach widest possible international audience, in order to share experiences and learn more on strategic nonviolent conflict spreading this knowledge to future generations.



From 2002-2012 CANVAS organized or participated in 135 workshops and conferences with more than 2500 participants from 46 different countries, empowering non-violent movements and help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ct more efficiently.

Together with partners CANVAS has developed a Curriculum for transferring knowledge on strategic nonviolent struggle and has published two books.

Together with Belgrade University CANVAS has developed graduate studies on methods of Nonviolent social change, which was started in February 2008, as well as a MA program in Political Analytics and Management starting from 2011.



After participating at the workshop created by CANVAS some groups managed to rich their goal like in

1. GEORGIA, 2003: knowledge transfer to "Kmara" movement which launched the "Revolution of Roses" and replaced Shevardnadze.

2. UKRAINE:, 2004: Knowledge transfer and training for "PORA" movement who were the leading engine of the "Orange Revolution" in which Kuchma was replaced.

3. LEBANON 2005: Trained the initial groups who performed the "Cedar Revolution" and launched the million-people sit-in after Harriri's assassination, with the effect of Syrian troops leaving Lebanon and ending 35 years of conflict.

4. MALDIVES 2008: Electoral victory of MDP and democratic allies against dictator Gayoom after 32 year of his regime. Mohamed Rasheed Anni opposition candidate was elected as first democratic president of this tiny and 100% Muslim country.

5. EGYPT 2011: knowledge transfer to the "April 6" movement and several other civic groups which played pivotal role for nonviolent revolution in Egypt replacing Hosni Mubarak.



There are many examples where certain ideas, tactic, campaigns are created at the workshops by participants and after implementation small victories were achieved in countries like Burma, Zimbabwe, Venezuela, Belarus, Iran, Syria etc. but struggles are still ongoing and hopefully will lead to regime cha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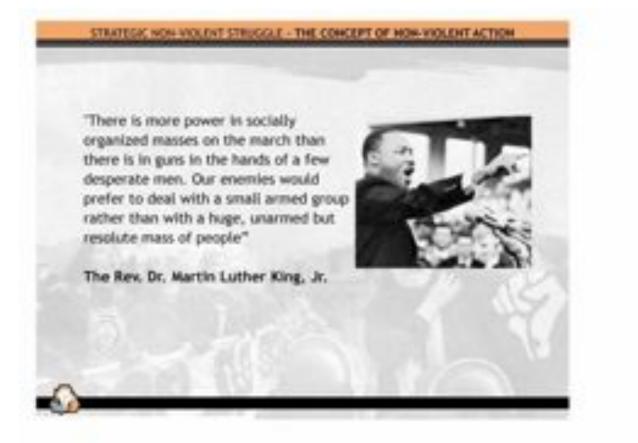
Common wisdom has it that whoever controls the military, the police, and the media ("pillars of support") is the one who holds power.

What is the concept of force?

Mao Zedong: "The power comes from the barrel of a gun"

Joseph Vissarionovich Stalin (referring to the head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 Pope? How many divisions has he got?"

On the surface, that may appear to be true.



However, Gandhi's efforts to end British rule in India, the drive to defeat Pinochet at the polls in Chile, the U.S. Civil Rights Movement under Martin Luther King Jr., Lech Walesa's leadership of the Solidarity labor movement in Poland, the overthrow of Slobodan Milosevic in Serbia, and recently the Middle East events prove that governments, no matter how brutal, ultimately rely on the consent of the people. A united movement, committed to nonviolence, with a thorough plan to achieve its goals is capable of momentous achievements. Such a strategic movement is the worst nightmare for every autocrat and can pull the pillars of support out of the government support and force the strongmen to make concessions once considered impossible.

#### What is the concept of nonviolent action?

Dr. Martin Luther King, Jr. "There is more power in socially organized masses on the march than there is in guns in the hands of a few desperate men. Our enemies would prefer to deal with a small armed group rather than with a huge, unarmed but resolute mass of people"



I will try now to explain connection between Serbian revolution and Arab spring.

Wrong perception of Frozen Region and "Either Dictatorship or Extremism" was present for decades in the minds of western policy makers. Instead, a huge number of mostly secular educated and young people inspired by the uprising in Tunisia have awakened throughout the region and discovered that they are in fact the ones who are powerful! Nobody in the west expected that.



CANVAS has been in touch with groups from across the region, especially Egyptian youth groups led by April 6th, a student group formed in 2008. Representatives of April 6th visited Serbia in July 2009 and developed mobilization and knowledge transfer capabilities, which has given them a pivotal role in protests 2011 and the igniting phase of "Tahrir Square revolution"



#### SERBIA-ARAB SPRING LESSONS LEARNED

- 1. Universal principles for success : Unity, Planning And Nonviolent Discipline
- 2. "Fear versus Enthusiasm" Phenomenon, when enthusiasm is growing fear is going down, and vice versa
- 3. Tactics of dispersion and using humor to undermine the authority of ruler

Since Gandhi, Unity is the main principle of success in nonviolent struggle. Whether it concerns building unity of white people with oppressed black majority in Civil Rights and anti apartheid movements or Serbian OTPOR's effort to bring together 18 opposition parties behind one anti-Milosevic candidate the principle stays equally crucial. The unity factor has been greatly present in Egyptian struggle



#### UNITY IN SYMBOLS:

Similar to Serbs who stood behind OTPOR's fist, when Egyptians understood they had to be united under the same symbols, they met on Tahrir Square and individual groups agreed to get rid of different symbols, including the clenched fist – symbol used by April 6th, and to appear on the square only under the Egyptian flag.

#### UNITY OF RELIGIOUS GROUPS:

Powerful picture of: Coptic Christians at Tahrir Square formed ranks to protect the Muslims while they prayed. The day after, thousands of Muslims cheer a Coptic wedding at Tahrir Square



#### PLANNING TO OVERTAKE SELECTED "PILLARS OF SUPPORT"

In order to run a successful non-violent revolution, movements from Gandhi through Valensa to Aquino were planning how to predict the opponent's next move and pull people out of institutions which were supporting the status quo.

In the case of Egypt

- Fraternization with Army from day one was part of the plan and was successfully implemented at the street.

- Overtaking role of police withdrawn by Mubarak to provoke chaos and disorder (pictures of common check point between police and protesters, and guardians of the neighborhood)

- Communicating clearly and moving international progressively from "terrified" and "suspicious" – and therefore reluctant to give up "their dictators" to "supportive to the opposition". In the case of Obama / Mubarak relations ... from Obama's worm kisses in 2009 to "Mubarak you must step down" in 2011 after few days of peaceful protest.



#### NONVIOLENT DISCIPLINE

Similar to Serbian 1996-97 students' protest when Milosevic was trying to push his supporters against students on December 24th 1996, Egyptian protesters strategically avoided a clash with violent Mubarak supporters when directly attacked. They maintained a carnival and positive atmosphere and managed to keep nonviolent disciple of the people.



#### MELTING FEAR AND BUILDING ENTHUSIASM

Similar to Chile, South Africa and Serbia, movements in Tunisia and Egypt have recognized that once FEAR starts melting and enthusiasm starts growing, a repressive regime based on pillars of coercion cannot adapt. The use of low-risk tactics of dispersion and humor was crucial in undermining the fear and authority of Mubarak.



#### GOOD SELECTION OF STRATEGY AND TACTICS

Linking tactics is even more important than just implementing it. It should be clear what steps movement will move next in predicted situations and what steps will move for each of opponent reactions. Great leader Sun Tzu wrote "Strategy without tactics is the slowest route to victory. Tactics without strategy is the noise before defeat".



#### VARIOUS SCENARIOS FOR ONGOING STRUGGLES IN ARAB WORLD

As you probably know many different struggles are ongoing today, not just in Arab world but I will focus on that right now.

**Various scenarios for other Arab countries** depend on whether the individual movements can recognize and successfully apply principles of Unity, Planning and Nonviolent discipline and to what extent governments are ready to accommodate, or choose to use lethal force to maintain fear as their major source of power. There are 4 major types of these scenar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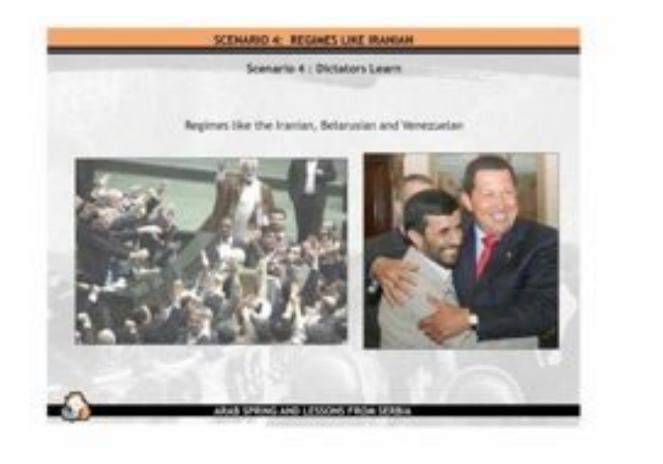
Egypt and Tunisia and their **transition** will be an important test for the rest of the Arab world. The energy of the movements should be carefully used for necessary legal and political changes, but also to keep the new government accountable, elections free and fair and the civil sector stable and durable – as the guarantee for long term democracy.



Movement pressure followed by regime **accommodation** - a number of regimes in fact understood that the time of "frozen authoritarian state" has expired and either gladly or reluctantly makes accommodations, from "cosmetic" to "substantial". Societies like Jordan, Morocco and maybe even Algeria will experience gradual change and slow opening.



Movements are incapable of following principles (Unity in Bahrain, nonviolent discipline in Libya, Syria etc.) and regimes are ready to use deadly force – which will lead a number of these countries to the spiral of **violence** and a threat of long-term conflict and divisions



**Regimes like the Iranian** (but also Belarusian and Venezuelan) who are researching the People Power Revolutions Phenomenon will likely try to overtake political space from the opposition in order to avoid pro-democratic movement's development with limited use of threat and violence, in which case outcome will depend on whether or not opposition may take the offense or lose ground. If there is no good alternative and if international community starts with wrong measures it will lead to isolation or self isolation of dictators, but that will make people of those countries hostages of the regime.

None of them are similar and same time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ut for sure North Korea is totally different from all of them. In North Korea people are hostages for decades. Yet, all scenarios are possible 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aspora groups could contribute to avoid violence and to infect people from inside to struggle for their freedom.



#### **ROLE OF NEW MEDIA:**

#### IMPORTANT TOOL BUT NOT CRUCIAL ROLE!

If you say new media in any other part of the world people will think about internet, social networks like facebook or twiter, smart phones and many other things that are more and more available, but in North Korea even open radio channel would be new media. However, fact that there are more than 1.000.000 users of mobile phones today is opportunity which should be observed.



#### North Korea challenge

In dictators interest is to close his country as much as possible and North Korea is example how closed society can be controlled efficiently. New sanctions will just help regime and push people of North Korea more in the hands of ruler. I need to emphasize that I am not an expert on North Korea issue, but have some expertise in strategic nonviolent struggle and from my perspective it would be much better if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find the ways how to open that society and how to communicate with people on ground as much as possible. Biggest mistake would be not to communicate with "prisoners" and not try to call "prison guards" mind to open jail, which North Korea unfortunately for a very long time is. Biggest challenge is to overcome the fear of ordinary North Kore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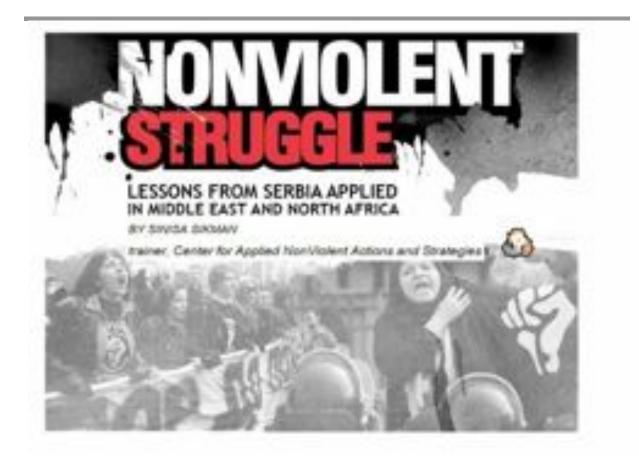
I will be here with you in next few days and I am open to speak with you, but you can find more about CANVAS work if you follow those links and more important if you want the knowledge about strategic nonviolent struggle you can find it in these two books downloadable for free from our web site www.canvasopedia.org.



Slide 23 The End

## 비폭력 저항: 세르비아의 영향을 받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로부터의 교훈

Sinisa Sikman / CANVAS



#### Slide 1

OTPOR 가 Slobodan Milosevic 의 독재정부를 전복시킨 후 여러 국제적인 그룹들은 우리의 경험과 방법에 대해 배우려 우리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Centre for Applied Non-Violent Action and Strategies (CANVAS)의 창립자들이 OTPOR 를 조직한 사람들 중의 일원이었고 그들은 비폭력적인 운동의 기초를 창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CANVAS 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적이고 정부와 속하지 않았으며 비폭력적 분쟁에 대해 교육적 활동을 지향합니다.

현재 우리의 목표는 비폭력적이고 전략적인 분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세계사람들과 미래의 세대에게 우리의 지식을 가능한 한 널리 전달하는 것입니다.



2002 년부터 2012 년까지 CANVAS 는 46 개국에서 온 2500 이상의 참가자들과 함께 135 번의 워크샵과 회의를 주선하거나 참여했고, 비폭력 운동이 가능하게 노력하고, 국제 조직들이 더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CANVAS 는 비폭력적이고 전략적인 투쟁에 대한 지식을 국제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두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CANVAS 는 2008 년 2 월부터 비폭력적 사회변화 방법의 대학원 과정과 2011 년부터는 정치분석과 경영 석사 프로그램을 베오그라드 대학교와 함께 개발해왔습니다.



CANVAS 가 주최한 워크샾에 참석 후 여러 조직들이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활동했습니다.

1. 그루지야, 2003: "장미 혁명"을 시작하게 하고 셰바르드나제라 대통령을 교체한 "Kmara" 운동에게 경험과 지식을 전했습니다.

2. 우크라이나, 2004: "PORA" 운동에게 지식을 전달했고 그들은 쿠치마 대통령을 교체한
 '오렌지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 레바논, 2005: 우리는"Cedar 혁명"을 시작한 초기 조직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은 라피크 하리리 정치인을 암살 후에 백만 명의 사람들이 연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리아 군인들이 레바논에서 나갔고 35 년 동안의 갈등이 끝났습니다.

4. 몰디브, 2008: 32 년 동안의 독재자 '가윰'의 지배에 대항하여 MDP 와 그들의 민주적 협력자들은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야당 후보였던 '무하메드 라시드 안니'는 100% 이슬람교도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5. 이집트, 2011: 호스니 '무바라크'를 교체한 비폭력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4월 6일 운동"과 다른 시민 조직들에게 지식전달을 마쳤습니다.



워크샾에서 아이디어, 기술과 캠페인들이 참가자들에 의해 새롭게 제시되었고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버마, 벨로루시, 이란, 시리아 등 에서 작은 승리를 거둔 예가 많이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이 운동들이 정권교체를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통념에 의하면 누가 군대, 경찰과 대중 매체를 통제하든지 분명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마오쩌둥은 권력의 원천이 총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스탈린은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 몇 개 사단(군인)이 있어?" 겉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 STRATEGIC NON-VIOLENT STRUGGLE - THE CONCEPT OF NON-VIOLENT ACTION

"There is more power in socially organized masses on the march than there is in guns in the hands of a few desperate men. Our enemies would prefer to deal with a small armed group rather than with a huge, unarmed but resolute mass of people"

The Rev. Dr. Martin Luther King, Jr.

#### Slide 6

하지만, 간디가 영국 제국의 지배를 없애려고 하는 것, 칠레에서 피노체트를 선거로 패배시키는 운동, 마틴 루터 킹의 미국 시민 권리 운동, 폴란드에서 레흐 바웬사가 노동 결속 운동을 이끄는 것, 세르비아에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정부를 전복시켰던 것과 최근의 중동에서 일어난 민주적인 운동들은 정부가 아무리 잔혹하다고 해도 그들의 국민의 동의와 찬성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비폭력에 전념한 일심동체의 움직임과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세한 계획을 세우면 그들은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운동은 모든 독재자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지만 이런 운동들이 정부의 뿌리를 뽑을 수 있고 독재자에게는 불가능한 줄 알았던 양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 비폭력운동의 이념은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 킹은 "사회적으로 조직된 대중은 몇 명의 총을 가진 위기의 사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총은 없지만 결심으로 뭉친 대중보다 총을 가진 소규모의 단체와 협상하길 더 선호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Serbian 혁명과 "Arab Spring"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몇 십 년 동안 서양의 정책을 만든 정치인들은 "Frozen Region"에 독재정부가 없으면 과격주의가 일어날 거라고 잘못 생각해왔습니다. 대신에 튀니시아 혁명에서 영감을 받은 대다수의 비종교적이고 교육을 받은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깨닫고 일어났습니다. 서양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CANVAS 는 특히 이집트 젊은 사람들의 단체들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2008 년에 형성된 April 6th 라는 단체는 이 그룹들 중에 하나입니다. 2009 년 7 월에 April 6th 의 대표들이 동원할 수 있게 되고 지식전달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세르비아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April 6th"은 2011 년에 일어난 "타히르 광장 혁명"과 정부에 반대한 항쟁에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 세르비아와 '아랍의 봄'에서 배운 점

- 1. 일반적인 성공을 위한 방법: 통합,계획과 비폭력적인 규율
- "두려움 대 열정" 현상: 열정이 일어나면 두려움은 감소한다. 반대로 두려움이 일어나면 열정은 감소한다.
- 3. 확산의 전술과 독재자의 권력을 줄이기 위해 농담을 사용할 것

간디 이후로 통합과 조화는 비폭력 운동의 중심적인 이론이 되었다. 시민 평등권 운동과 아파르트헤이트를 반대한 운동에서 백인들이 억압당한 흑인들과 함께 진행했던 것이든 OTPOR 라는 세르비아 시민 단체가 18 개의 야당들로 하여금 밀로셰비치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 하나의 후보자를 지지하게 만든 노력이든지 하는 통합은 비폭력 운동의 중심입니다. 이집트 시민 운동에서 통합이 대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상징으로 통합을 표현하는 것

OTPOR 의 주먹 상징으로 혁명을 한 세르비아인과 비슷하게 이집트인들은 상징으로 통합이 되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타히르광장에서 모였고 오직 이집트 국기만 사용하기로 동의하고 April 6th 의 주먹상징을 포함한 개인적인 단체들의 모든 상징을 버렸습니다.

종교적인 단체들의 통합

이것은 타히르광장에서 이슬람교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콥트교회의 기독교도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진 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타히르광장에서 수천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콥트 교회의 결혼식에 갈채를 보냈습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제도를 능가할 계획 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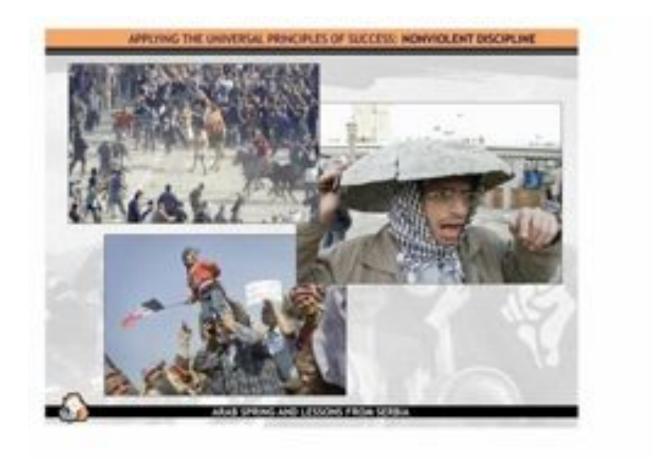
간디부터 아키노까지 시민 운동들이 비폭력적인 혁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적의 다음 행동을 예상하며 계획을 했고 현재의 상황을 지지한 제도로부터 사람들을 빼내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처음부터 군대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었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일으키기 위한 무바라크의 물러남과 경찰의 역할

반대지지운동은 전세계의 지도자들을 시민 운동에 대한 두려움과 의혹을 갖는 것을 없애고 반대운동을 지지하게 하기 위해 전세계에게 계속적으로 명백하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2009년에 무바라크를 지지했지만 2011년 평화적 항쟁 몇 일 후에는 "무바라크가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폭력적인 규율

1996-97 년 12월 6일 세르비아의 학생 항쟁에서 밀로셰비치가 그를 지지자들에게 학생들을 공격하게 만들려고 할 때와 비슷하게 무바라크의 지지자들이 이집트의 항의자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 그들은 폭력적인 지지자들과의 충돌을 전략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축제 분위기를 유지했고 시위자들은 자신들의 규율을 유지했습니다.



#### 두려움을 없애고 열정을 강하게 하는 것

칠레, 남아프리카, 세르비아와 비슷하게 이집트와 튀니지아에서의 운동 역시 일단 두려움이 없어지고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시민들을 억압하는 것을 바탕을 두고 지배하는 정부들이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전략과 유머를 사용한 것은 무바라크에 대한 두려움과 권력을 없애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기술과 전략을 잘 선택하는 것

기술을 연결하는 것은 어떤 기술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해야 하고 그 반응에 따라 적당한 기술과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Sun tzu 장군은 "기술 없는 전략은 승리를 향해 가는 가장 느린 길이고 전략 없는 기술은 패배 당하기 전 마지막 잡음이다." 라고 했다.



#### 여러 아랍세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운동의 현재 상황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세계에서 여러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저는 아랍세계에 대해 집중하겠습니다. 아랍 시민운동들이 성공할지 못할지는 두 개의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 통합, 계획과 비폭력적인 규율들의 원칙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지배정부들이 얼마나 허용하든지 간에 치명적으로 진입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4 개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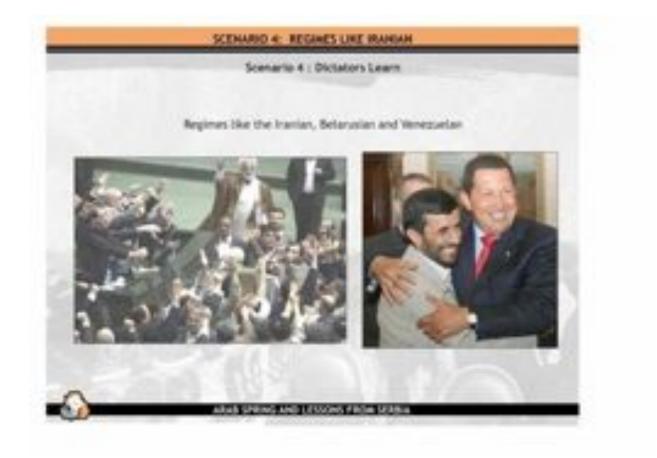
이집트와 튀니지아의 정치적인 전환은 나머지 아랍세계에게는 중요한 실험 일 것입니다. 각 나라의 운동들은 그들의 힘과 열정을 정치적, 법률적 변화를 위해 조심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책임을 질 수 있는 새 정부와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와 튼튼한 시민 사회를 유지해 야합니다. 이 조건들은 장기적인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지배정부를 압박을 주다 보니 정부는 허용 하는 것 – 사실은 여러 정권들은 독재적인 국가 시대가 없어진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정부를 변화시키거나 마지못해 통치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모로코, 요르단과 심지어는 알제리까지 서서히 변화될 것입니다.



정해놓았던 원칙을 따르지 못하는 운동 (예를 들어 바레인의 시민 운동은 통합을 이루지 못했고 리비아와 시리아는 비폭력적인 규율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나 치명적으로 시민들을 억제하는 것이 준비된 정부들이 있을 때 국가는 폭력적인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일어나면 장기적인 갈등과 분할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벨로루시와 같은 정권은 시민운동과 혁명 현상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고 이러한 시민운동을 제한 하기 위해 야당으로부터 정치적인 공간을 차지하려 폭력과 협박을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의 결과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 단체들이 후퇴하거나 국제사회가 잘못된 방법으로 간섭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스스로 고립할 수도 있고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을 정권의 인질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전에 언급했던 국가들의 상황은 전적으로 같지않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확실히 전면적으로 다릅니다. 북한 시민들은 몇 십 년 동안 정부에게 인질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에서도 여러 결과들이 가능합니다. 국제사회와 북한의 디아스포라는 북한인들을 자유를 위해 비폭력적으로 노력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새 매체의 역할

중요한 기술이지만 결정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매체에 대해 생각하면 인터넷, 스마트폰, 사회적 네트워크 즉 페이스북과 트위터들은 떠오를 것입니다.하지만,북한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라디오 채널들이 개발되면 이것이 새 매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도 100 만개의 핸드폰들이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 입니다.



북한의 도전

독재자들은 자신의 이익으로서 지배하는 나라를 국제사회로부터 최대한 고립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고립된 국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치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새 제재는 정권에 도움이 될 데다가 북한인들을 더 고생하게 하고 지도자를 더 지지하도록 만들 것 입니다. 저는 북한 상황에 전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폭력적이고 전략적인 투쟁에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제 입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사회가 북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슬픈 사실은 북한은 감옥입니다. 제일 큰 착오는 북한인이라는 재소자와 연락하려고 하지 않고 "교도관"을 북한이라는 감옥을 열도록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큰 도전은 우리가 일반적인 북한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야합니다.



저는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며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ANVAS 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전략적이고 비폭력적인 투쟁에 대해 잘 알게 될 수 있고 두 권의 책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Slide 23 The End

## <발 표>

### UK Government's approach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Experience from working in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s Human Rights Department

#### Alisdair Walker / British Embassy Seoul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speak today. I am not as well qualified as your previous speaker but I hope that I can share with you something useful of the UK Government's approach to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some of my own limited experience from working in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s Human Rights Department and from focusing on North Korea for the last four years.

As the Foreign Secretary said at the launch of the 2010 Human Rights Report, the UK Government is committed "to a foreign policy that has the practical promotion of human rights as part of its irreducible core. Promoting human rights is indivisible from our foreign policy objectives".

The UK Government has been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of the DPRK for a number of years. As we said in our 2010 repor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as repeatedly claimed that international concern about its human rights has the sole aim of undermining the regime, and that it has its own, adequat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owever, information from a variety of sources, much of it from North Korean defectors, paints a picture of serious and widespread abuse. This includes political prisons and labour rehabilitation camps; regular use of the death penalty, including extrajudicial and public executions; routine use of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and severe restrictions on freedom of speech, movement, assembly, and information. Human rights, as understood by the rest of the world, do not exist in the DPRK."

We use every opportunity to raise our concerns. We are strong supporters of UN resolutions. Our Embassy in Pyongyang raises human rights with the regime regularly. We also pursue bilateral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DPRK that could have a practical impact including providing support for projects that help children, food security and the disabled.

However this workshop is about building capacity for the future. As I said, I worked for two years in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s Human Rights Department. During this time I focused on torture prevention and in particular developing tools for NGOs to properly document incidents of torture. These tools have been used by NGOs across the Former Soviet Union,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Central Asia and Africa. Only by bringing such incidents to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eradication stand any chance of success. North Korea hopes to shut away anyone who criticizes the regime but it is important that we make sure that their stories are heard and where they have suffered abuse, that this is documented.

As David Hawk said recently in the JoongAng Daily,

"It is worth recalling that some 45 years ago political prisoner in China were an undifferentiated mass of people unknown to the rest of the world. In fact, Andrei Sakharov, the renowned Soviet scientist and dissident, together with other Soviet dissidents in the 1970s publicly called on their Chinese counterparts to establish lines of communication with the outside world in order to prevent the authorities "from crushing them without trace in the remote labour camps and prisons". They pointed out that international exposu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was an important way to deter governments and bring about change. Today, North Korean prisoners are the ones coming to the fore. Their country, now led by Kim Jong-un, continues to be closed to the world, but the conspiracy of silence surrounding the camps is nonetheless being breached."

The prohibition of torture is absolute and carries a special status in international law. It is so fundamental a principle that even if a state has not ratified a treaty prohibiting torture, the prohibition against it binds that State. No circumstances whatsoever, including for example war or a public emergency, can ever justify torture. Despite all these international commitments to the prohibition of torture and its status as one of the few universally recognised human rights, torture is still widely practised. Analysis of available statistics suggests that torture occurs frequently in over 40% of countries and as I said earlier DPRK is one of those countries.

Torture is most likely to occur during criminal investigation or state security processes. It is likely to be perpetrated by those who have the power to detain or who have access to people who have been detained: prison officers, the police, the military or paramilitary, or even doctors or other health professionals. It is a serious crime and a human rights violation which must be investigated, prosecuted and punished.

Approaches to torture prevention need to be different for individual countries. In seeking positive changes we work in partnership with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 actors in ways which are suited to the grain of the societies we are working with. This will mean calling for accountability when there are credible allegations of torture and we believe it is effective and appropriate to do so.

My Foreign Ministry has over the past 15 years produced a range of materials to help NGOs and medical professionals first, but also judges and prosecutors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when the time is right, tackle torture. A variety of international bodies exist to make torture a thing of the past but without information, their hands are tied. The UN Special Rapporteurs on Torture and North Korea a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Committee need information to report on the scale of the problem. NGOs are the key bearers.

The torture handbook is aimed at the less experienced NGOs for them to learn to document and report on incidents of torture. By following the procedures in this handbook, NGOs can produce highquality information on individual incidents and patterns. The only way to pry open the ey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lesser known situations are to ensure that reliable information reaches it. In this context, it is impossible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NGOs in the battle for the eradication of torture. While a few specialised NGOs have adopted excellent methods of reporting, many less experienced NGOs are either un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information they provide, or have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how best to present it. In the specific context of torture allegations, it is unfortunately the case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such NGOs is wasted, not because the allegations are unfounded, but simply because important facts are omitted, because the allegation is worded in excessively political language or because it is submitted in a language which the person receiving the allegation does not understand and does not possess the resources to have translated. This handbook is designed to stop this happening. The second half then guides you on what to do with this information.

Backing this up, there is a second handbook for doctors and medical personnel who support NGOs in the fight against torture. This Handbook is primarily aimed at raising awareness of relevant medical ethical, legal and professional standards of the many health professionals who would wish to do the most conscientious job, with a view to helping victims of torture and contributing to efforts to eliminate the practice. The key task is to establish the most scientifically valid documentation concerning possible torture of individuals, consistent with the often difficult conditions under which the work sometimes has to be undertaken. It is inspired by The Istanbul Protocol, approved by United Nations bodies, which lays down the best professional standards for physicians working in the field. Yet it recognises that not all health professionals called on to do the work will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this field and it presents the material in a way that aims to be accessible to all these professionals.

In every country, over time, the rule of law will be established and there will be good men and women who will want to do the right thing and insure justice is delivered. With this mind, I worked with human rights experts at Essex University in the UK to produce a handbook for judges and prosecutors to help them tackle torture being carried out by law enforcement personnel. This handbook outlines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judges and prosecutors to prevent and investigate the acts of torture, to ensure that those who perpetrate such acts are brought to justice and that the victims receive redress. It describes the law, the safeguards and the role of judges and prosecutors and how to conduct investigations. Although primarily aimed at judges and prosecutors, the manual can also be used as a resource by defence lawyers who play a vital role in criminal trials and who repres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bulwarks against torture, and other forms of ill-treatment, for those who have been deprived of their liberty. A well-informed and sensitised legal profession has a vital role to play in eradicating torture and this manual is also aimed at helping its members to fulfil that professional function.

Finally before I left the human rights department I started work on a handbook with a police officer working with the European Committee on the Prevention of Torture.aimed at police officers to assist them in ethical investigation and avoid recourse to torture. If you look at the evidence, in many countries the police turn to torture because they are under pressure to produce convictions. However whatever the pressures and expectations of the legal systems in which they operate, police officers cannot absolve themselves of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which a fundamental rule is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ill-treatment. This manual has been written by a former police officer who, drawing on his practical experience, offers some new ideas and new ways of approaching investigative problems.

These books, although aimed at different groups of people, are essential tools for NGOs working to eradicate torture in their countries. Clearly we are many years from seeing this happen in North Korea but if there is any relaxation in the grip of the regime then I expect civil society will be the first shoots of growth that we will see emerging and they will need training and tools to start to hold their government to account. For now, we need groups like those represented here to develop their capacity and prepare for the future. The materials that I have mentioned here has been used by NGOs across Eastern Europe, Africa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nd have been translated into a number of language although I am sad to say I don't think Korean is one of those languages.

### 인권 신장을 위한 영국정부의 입장과 영국 외무부 인권과 에서의 경험

알리스데어 워커 / 영국대사관 참사관

오늘 저를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분만큼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인권 신장을 위한 영국정부의 입장과 저의 제한된 경험, 즉 영국 외무부 인권과에서의 경험과 지난 4 년 간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0 년 인권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외무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국정부는 인권의 실질적인 신장을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의 일부'로 간주하는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신장은 우리의 외교정책 목표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영국정부는 오랫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0 년 인권보고서에도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그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적 때문이고, 북한은 인권보호를 위한 나름의 적절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러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그 중 많은 것은 탈북자들로부터 나온 것인데, 북한에는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사법적 절차를 무시한 공개처형을 비롯한 주기적 사형집행, 고문 및 비인간적 가혹행위의 일상적 사용,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보취득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등이다. 세계의 다른 곳에서 알고 있는 인권이 북한에는 없다."

우리 영국은 인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UN 결의안들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평양에 있는 영국대사관은 북한 정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에서 아동, 식량 안전, 장애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북한과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담회는 미래를 위한 능력을 구축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저는 2 년간 영국 외무부 인권과에서 일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고문 방지, 특히 NGO들이 고문 사례들을 적절히 기록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도구들은 지금까지 구 소련,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야 그러한 고문을 없애는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북한은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인권침해사례들이 공개되도록 하고,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자행되었는지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중앙일보에 기고한 '데이비드 호크'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약 45 년 전, 중국의 정치범 수용소 구금자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얼굴 없는 무리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저명한 소련 과학자이자 반체제인사였던 안드레이 사하로프가 1970 년대 동료 반체제인사들과 더불어 중국 반체제인사들에게 당국이 그들을 "외딴 노동수용소와 감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외부세계와 연락망을 구축하도록 공개적으로 촉구한 적이 있었다. 샤하로프를 비롯한 소련 반체제인사들은 인권위반을 국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정부가 이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황이 바뀌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북한의 구금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현재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북한은 여전히 외부와 단절되어 있지만, 그 수용소군도를 에워싼 '침묵의 음모'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고문을 금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며, 국제법에서도 특별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근본적 원칙이기 때문에 가령 한 국가가 고문을 금지하는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고문금지는 그 국가에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령 전쟁이나 비상사태라도 고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고문을 금지하기로 국제사회가 모두 약속을 하고 고문금지는 인류 보편적으로 인정된 몇 개의 인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아직도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통계들을 분석해 보면, 고문은 현재 40% 이상의 국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 드렸듯이, 북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고문은 범죄 수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고문은 구속을 하는 권력, 그리고 구속된 사람들에게 접근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자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옥의 간수, 경찰, 군인 및 그런 비슷한 사람들, 혹은 심지어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고문은 심각한 범죄이자 인권유린이기 때문에 조사되고, 기소되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고문방지를 위한 접근방법은 나라 별로 달라야 합니다. 긍정적 변화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각 사회의 특질에 맞는 방식으로 정부 및 비정부 인사들과 제휴하여 함께 일합니다.이 말의 의미는 고문을 받았다는 믿을 만한 주장이 있으면, 그것을 해당 정부가 설명하기를 요구한다는 의미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지난 15 년 간 여러 자료들을 만들어서 먼저 NGO 들과 의료전문가들이 고문을 다루는데 도움을 주어 왔으며, 또 시간적으로 적절한 경우는 판사, 검사, 경찰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고문을 과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국제단체가 있지만 정보가 없으면, 그들의 손은 묶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문 및 북한 인권에 대한 UN 특별 참사관들」이나「UN 고문방지 위원회」도 정보가 있어야 그 문제의 범위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NGO 들이 중요한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문안내서」는 경험이 부족한 NGO 들에게 고문사례들을 기록해서 보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책자입니다. 이 안내서의 절차를 따르면, NGO 들은 개별 고문 사례와 고문의 유형에 대한 고급 정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덜 알려진 사례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문을 근절하는 싸움에 있어서 NGO 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뛰어난 보고방법들을 채택한 몇몇 전문적 NGO 들도 있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경험이 부족한 NGO 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정한 고문폭로의 맥락에서, 애석하게도 NGO 들로부터 받은 정보 중, 중요한 부분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 폭로가 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중요한 사실관계가 빠져 있거나, 그 폭로가 지나치게 정치적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그러한 폭로가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되어 있고, 그것을 번역할 소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안내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책자의 뒷부분 절반은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의 안내서를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안내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문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NGO 들을 지지하는 의사 및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주로 고문의 희생자들을 돕고 고문을 근절시키는데 기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양심적으로 일하는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고문과 관련된 의학적, 윤리적, 법적, 전문적 기준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는 고문에 대한 과학적으로 가장 타당한 기록들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것은 여러 어려운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UN 산하의 여러 기구들이 승인한 이스탄불 프로토콜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스탄불 프로토콜은 이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위한 최선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언젠가는 법치가 정착할 것이고, 법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영국 에섹스대학교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판사, 검사가 경찰이 저지르는 고문을 처리하는 것을 돕는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고문행위를 방지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을 반드시 법정에 새우고 희생자는 또 반드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판사와 검사의 책임과 의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법과 여러 가지 안전조처, 그리고 판사, 검사의 역할, 그리고 수사를 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로 판검사를 위해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이 안내서는 또한 형사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문과 그 외의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파제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는 피고 측 변호사가 이용하는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또 민감하다는 것은 고문을 근절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서는 법조계 종사자들이 그들의 직업적 기능을 다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권과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유럽 고문예방위원회」에서 일하는 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이 윤리적 수사를 하고 고문에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안내서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증거에 의하면, 많은 나라에서 범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야 하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경찰이 고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압박이 무엇이든 그리고 그 나라 법체계에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든 경찰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근본적 원칙으로 하는 국제법으로부터 그들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매뉴얼은 한 전직 경찰관이 작성한 것인데, 자신의 실제 경험에 입각해서, 수사문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이런 책자들은 자기나라에서 고문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NGO 들의 기본적 도구들입니다. 아마 한참 세월이 흘러야 가능해지겠지만, 저는 북한 정권의 통제가 좀 느슨해지면, 저는 그 사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시민사회일 것이고, 시민사회는 그들의 정부를 책임 있는 정부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도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북한 시민사회의 능력을 키워주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 대표로 참석하신 여러분이 속한 NGO 들이 필요합니다. 저가 오늘 언급한 자료들은 동유럽, 아프리카, 구소련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한국어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lisdair Walker British Embassy Seoul 17 April 2012

알리스데어 워커 서울 영국대사관 2012 년 4 월 17 일

## < MEMO >

## < MEMO >

### How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consultative status in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can use their influenc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Korean people

Jack Rendler

#### I. Consultative status and its privileges.

- 1. Defining your purpose, mission, core values and principles.
  - 1) for yourselves and your organization;
  - 2) for the public and the media;
  - 3) for funders.
- 2. Avoiding delusions of grandeur.
- **3.** Geneva and New York.
- 4. ECOSOC privileges and responsibilities (from the UN's NGO database):
  - 1) There are three types of consultative status: General, Special and Roster. Most new accreditations are in the Special category.
  - 2) Consultative status provides NGOs with access to not only ECOSOC, but also to its many subsidiary bodies, to the various human rights mechanisms of the United Nations, ad-hoc processes on small arms, as well as special events organized by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See 'UN News and Events' for samples. Note that the arrangements for NGO participation are different for every meeting, and set by the organizers of each event. All will require pre-registration. You must always have a valid grounds pass, and be accredited by a recognized NGO, to attend any event at the United Nations.
  - 3) Th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GO Branch, is the focal point within the UN Secretariat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providing: Support to NGOs, informing you in a timely fashion on events and opportunities to collaborate with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registration, through CSONet, facilitating participation of NGOs to most of the intergovernmental processes taking place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nd beyond; Technical assistance, carrying out limited capacitybuilding activities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 4) See the UN brochure "Working with ECOSOC an NGO's Guide to Consultative Status."
  - 5) You can sort and review all NGOs with ECOSOC consultative status in a UN online database.

- 6) General and special status NGOs are required to submit a 'quadrennial report' every four years.
- The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s a standing committee of ECOSOC. The Committee has 19 members who are elected on the basis of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 II. UN bodies most relevant to human rights in Korea (From UN documents)

- 1.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works to offer the best expertise and support to the different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bodies created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made up of independent experts mandated to monitor State parties' compliance with their treaty obligations.
- 2. The Human Rights Council is an inter-governmental body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responsible for strengthening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round the globe and for addressing situ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make recommendations on them. It has the ability to discuss all thematic human rights issues and situations that require its attention throughout the year. It meets at the UN Office at Geneva.
  - The Council is made up of 47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which are elec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The Human Rights Council replaced the former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 2) Current Membershi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0 June 2011 31 December 2012 by regional groups:

AFRICAN STAT	ΓES		LATIN AMERICAN STATES	& CARIBBEAN
Angola		2013	Chile	2014
Benin		2014	Costa Rica	2014
Botswana		2014	Cuba	2012
Burkina	Faso	2014	Ecuador	2013
Cameroon		2012	Guatemala	2013
Congo		2014	Mexico	2012
Djibouti		2012	Peru	2014
Libya		2013	Uruguay 2012	
Mauritania		2013		
Mauritius		2012		
Nigeria		2012		
Senegal		2012		
Uganda 2013				

ASIAN STATE	S		WESTERN EUROPE & OTHER STATES		
Bangladesh		2012	Austria	2014	
China		2012	Belgium	2012	
India		2014	Italy	2014	
Indonesia		2014	Norway	2012	
Jordan		2012	Spain	2013	
Kuwait		2014	Switzerland	2013	
Kyrgyzstan		2012	United States 2012		
Malaysia		2013			
Maldives		2013			
Philippines		2014			
Qatar		2013			
Saudi	Arabia	2012			
Thailand 2013					

#### EASTERN EUROPEAN STATES

Czech	Re	2014	
Hungary			2012
Poland			2013
Republic	of	Moldova	2013
Romania			2014
Russian Fede	eration 20	12	

**3.**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is a unique process which involves a review of the human rights records of all 192 UN Member States once every four years. The UPR is a Statedriven process, under the auspic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hich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each State to declare what actions it has taken to improve human rights and to fulfil human rights obligations. The UPR is designed to ensure equal treatment for every country when their human rights situations are assessed. No other universal mechanism of this kind exists.

### TENTATIVE TIMETABLE FOR THE FIRST SESSION OF THE 14<sup>TH</sup> SESSION OF THE UPR WORKING GROUP (22 OCTOBER – 5 NOVEMBER 2012)

#### First week

	Monday 22 October		Tuesday 23 October		Wedne 24 Octo	·	Thursday 25 October		Friday 26 October
1 <sup>st</sup>	9:00 - 12:30	Review of Czech Republ ic	9:00 - 12:30	Review of Gabon	9:00 - 12:30	<b>Review of Peru</b> Distribution of the report on Czech Republic	9:00 - 12:30	Review of Benin Distribut ion of the report on Gabon	
w e k	14:30 - 18:00	Review of Argent ina	14:30 - 18:00	Review of Ghana	14:30 - 18:00	ReviewofGuatemalaDistribution of thereportonArgentina	14:30 - 18:00	Review of Republic of Korea Distribut ion of the report on Ghana	UN HOLIDAY

#### Second week

	•		Tuesday 30 October		Wednesday 31 October		Thursday 1 November		Friday 2 November	
2 <sup>nd</sup>	9: 00 - 12: 30	Review of Switzer land	9:00 - 12:30	<b>Review of</b> <b>Pakistan</b> Distributio n of the report on Benin	10:00 - 11:30	Adoption of the reports on Benin,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 d	9:00 - 12:30	ReviewofUkraineDistributionofthe reportPakistan		
w e k	15: 00 - 18: 00	Adoption of the reports on Czech Republic, Argentina, Gabon, Ghana, Peru and Guate- mala	14:30 - 18:00	Review of Zambia Distributi on of the report on Republic of Korea	14:30 - 18:00	Review of Japan	14:30 - 18:00	<b>Review of Sri</b> Lanka Distribution of the report on Zambia	15:00 - 18:00	Adopti on of the reports on Pakista n, Zambi a and Japan

#### 4.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Special procedures is the general name given to the mechanisms establish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to address either specific country situations or thematic issues in all parts of the world. Currently, there are 35 thematic and 10 country mandates.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vides these mechanisms with personnel, policy, research and logistical support for the discharge of their mandates.

Various activities are undertaken by special procedures, including responding to individual complaints, conducting studies, providing advice on technical cooperation at the country level, and engaging in general promotional activities. Special procedures are either an individual (called "Special Rapporteur" or "Independent Expert") or a working group usually composed of five members (one from each region. Mandate-holders of the special procedures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and do not receive salaries or any other financial compensation for their work. The independent status of the mandate-holders is crucial in order to be able to fulfill their functions in all impartiality. Most Special Procedures receive information on specific alleg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end urgent appeals or letters of allegation to governments asking for clarification

Title /	Mandate established		Mandate extended		country of origin	Contact us
Mandate	in	by	in	by	of the mandate- holder(s)	Contact us
Special		Commissio		Human	Mr. Marzuki	hrdprk
<b>Rapporteur on</b>		n on		Rights	DARUSMAN	@ohchr.org
the situation of	2004	Human	2011	Council	(Indonesia)	
human rights in		Rights		resolution		
the Democratic		resolution		16/8		
People's		2004/13				
Republic of				(for 1		
Korea				year)		

#### 2) One of ten country mandates:

#### 3) Nine of 35 thematic mandate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1991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1/42	1997	Commissio 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7/50	Mr. El Hadji Malick SOW (Senegal) Chair-Rapporteur	wgad@ ohchr.or g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1980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XXXVI)	2007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7/12	Mr.JeremySARKIN(South Africa)Chair-Rapporteur Mr.ArielDULITZKY(Argentina/UnitedStates of America)Ms.JazminkaDZUMHUR(Bosnia andHerzegovina)Mr.Olivier deFROUVILLE (France)Mr.Mr.Osman EL-HAJJE (Lebanon)	wgeid@ ohchr.or g
SpecialRapporteuronextrajudicial,summaryorarbitraryexecutions	1982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82/35	2008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5	Mr. Christof HEYNS (South Africa)	eje@ ohchr.or g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ood	2000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0/10	2010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3/4	Mr. Olivier de SCHUTTER (Belgium)	srfood@ ohchr.or g
SpecialRapporteurontherightstofreedomofpeacefulassembly and ofassociationfreedomfreedomofpeaceful assemblyand ofand of associationfreedom	2010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5/21	1	1	Mr. Maina KIAI (Kenya)	freeasse mbly@o hchr.org

SpecialRapporteuronthepromotionand protection oftherighttofreedomopinionandexpression	1993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3/45	2008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7/36	<b>Mr. Frank</b> LA RUE (Guatemala)	freedex @ ohchr.or g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1986 1999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86/20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9/44	2010 2008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4/11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8/10	Mr. Heiner BIELEFELDT (Germany) Mr. François CREPEAU (Canada)	freedom ofreligio n@ ohchr.or g migrant @ohchr. org
SpecialRapporteurontorture and othercruel,inhumanordegradingtreatmentorpunishment	1985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85/33	2008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8/8	<b>Mr. Juan MENDEZ</b> (Argentina)	sr- torture @ ohchr.or g

#### 4) Communications

Some special procedures mechanisms intervene directly with governments on specific allegation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at come within their mandates. The intervention can relate to a human rights violation that has already occurred, is ongoing, or which has a high risk of occurring. The process, in general, involves sending a letter to the concerned State requesting information and comments on the allegation and asking that preventive or investigatory action be taken. Communications may deal with individual cases, general trends and patter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a particular country, cases affecting a particular group or community, or the content of draft or existing legislation considered to be not fully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e decision to intervene is at the discretion of the special procedure mandate holder and will depend on the various criteria established by him or her, as well as the criteria laid out in the Code of Conduct. The criteria will generally relate to: the reliability of the source and the credibility of information received; the details provided; and the scope of the mandate. However, it must be emphasized that the criteria and the procedure involved in responding to an individual complaint vary, so it is necessary to submit a commun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requirements established by each special procedure.

#### 5) How to submit information

- For cases relating to individuals the following minimum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in order to enable special procedures to assess the information:
  - Identification of the alleged victim(s);
  - Identification of the alleged perpetrators of the violation (if known);
  - Identification of the person(s) or organization(s) submitting communication (this information will be kept confidential;
  - Date and place of incident;
  -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ircumstances of the incident.
- Other details pertaining to the specific alleged violation may be required by the relevant thematic mandates (e.g. past and present places of detention of the victim; any medical certificate issued to the victim; identification of witnesses to the alleged violation; any measures undertaken to seek redress locally, etc.).
- Communications that contain abusive language or that are obviously politically motivated are not considered. Communications should describe the facts of the incident and the relevant details referred to above clearly and concisely. Communications should not be based solely on media reports.
- Protection of victims and sources: It should be noted that neither Special Procedure mandate holders nor the United Nations have the means to ensure the safety of persons on whose behalf they may intervene. Communications sent and State replies received remain confidential until they are published in communications reports submitted to each regular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June and September). However, in appropriate situations, including those of grave concern a Special Procedure mandate-holder may issue a press statement or public statement earlier. The names of alleged victims are usually included in the communications reports, except if privacy or protection concerns require keeping the identity of the concerned victim(s) confidential. Persons making submission should therefore clearly indicate in their submissions whether they wish that the name of an alleged victim or other details should not be published. The identity of the source of information is always kept confidential and neither included in the communication sent to the Government, nor in the public communications report.
- Questionnaires: To facilitate the consideration of reported violations, questionnaires relating to several mandates are available to persons wishing to report cases of alleged violations. It should, however, be noted that communications are considered even when they are not submitted in the form of a questionnaire. For specific information concerning the individual communication procedures of each special procedure mandate please consult the individual UN webpages of thematic mandates or country mandates. In order to ensure a timely consideration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to Special Procedures, submissions should be submitted in English, French or Spanish. Preferably a translation into one of these languages should accompany supporting documentation in original language.

 After consulting the requirements established by each mandate for the submission of allegations, information can be submitted by fax to +41 22 917 90 06, by e-mail to urgent-action@ohchr.org, or by postal mail to: OHCHR-UNOG 8-14 Avenue de la Paix
 1211 Geneva 10 Switzerland
 Please specify which special procedure mechanism the information is addressed to in the subject line of the e-mail or fax, or on the cover of the envelope.

• Follow-up informatio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re encouraged to provide updates on new developments relating to a case they hav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special procedures to address mentioned above (urgent-action@ohchr.org ). Such updates could relate for example to the following events: The release of a concerned individual from detention, a new court judgment, or measures taken by the concerned authorities to improve the situation.

#### 5. Individual country missions to the UN in New York and Geneva.

- 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 in New York: 820 Second Avenue, 13th Floor New York, NY 10017 USA
   1.212.972.3105
- 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 of in Geneva:

   chemin de Plonjon
   Geneva
   Switzerland

+22.735.4370

-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UN in NYC: 350 East 35th Street, New York, NY 10016 USA http://www.china-un.org/eng/ Email : chinamission\_un@mfa.gov.cn
- 4)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UN, Geneva: 11, chemin de Surville 1213 Petit-Lancy Geneva Switzerland

# III. Avenues and methods of influence. (From Amnesty International)

# 1. Lobbying

Is often associated with quiet words behind closed doors, but this is just one technique. It is usually necessary to use many other campaigning methods to persuade a government to listen seriously to those quiet words and to take the desired action. Lobbying can include:

- 1) Visits or meetings with officials in the capital city, at the embassy or in local/district offices.
- 2) Discussions with officials at inter-governmental meetings (eg. United Nations conferences, ASEAN summits, Commonwealth gatherings).
- 3) Trips or excursions organized for officials.
- 4) Letters, petitions and other forms of contact with decision makers.

Why lobbying governments is important:

- 1) Governments have power.
- 2) Politicians lead as well as follow public opinion.
- 3) Governments can influence other governments.
- 4) Governments compose and decide the actions of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 5) Governments can strength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mechanisms.
- 6) Governments can change legislation and practice.

## 2. Who to Lobby

#### 1) Research and analysis.

The starting point for developing strategies is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situation you are in, the problems you are trying to overcome, the opportunities you may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and the resources you have available.

#### 2) **Questions**:

Has the government you are lobbying signed and ratified 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as the government made explicit policy statements and commitments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Is there parliamentary scrutiny or other official monitoring mechanisms on government policy? Are there any mechanisms for independent scrutiny of the links between human rights and foreign/trade/defence policy?

Who is responsible for these mechanisms?

Are there any formal mechanisms for human rights organisations to input into policy generally and in relation to specific countries or issues?

Does the government have particular military, economic or cultural links with other countries that may give it influence? Which are these countries? What are the sources of influence within these countries?

In which IGO bodies is your government represented? Is it represented on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 Security Council, the World Bank, regional IGOs? Which ministers, departments and interest groups are involved in the formulation of foreign (or other relevant) policy generally and in relation to specific countries or issues? Do you have good access to these people?

Who is responsible for foreign policy within political parties?

Is the media influential on foreign or trade policy?

Is the media more influential in relation to some countries or issues than others?

Are some media or journalists more influential on policy than others?

Are particular individuals, such as judges, academics, writers or television personalities, likely to have greater influence on policy than other people?

How i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rganised? Are there specialists on particular countries and themes? Are you in direct contact with them?

Is there an institutional policymaking body on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as a human rights unit? Are you in direct contact with them?

Is there specific legislation on the human rights considerations of military or economic links? Is there a wider constituency of support for 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foreign policy, such as other NGOs?

# 3. How to Lobby

1) Practicalities of lobbying.

The process of informing and persuading those with power or influence to act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involves a number of techniques. You may decide you need to use membership action, the influence of third parties and media publicity, or you might simply have a chat with the foreign minister over a cup of coffee. In the long-term, success also depends on the following:

# 2) Specify objectives.

The overall objective of a lobbying programme is to ensure that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becomes a key component of the government'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relevant domestic policy). Depending on how far this objective is from being achieved, other shorter term objectives need to be set based on your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These objectives could be:

- Developing public debate about foreign policy and human rights;
- Developing contact with elected representatives and political partie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 Establishment of an annual independent review of government action on human rights;
- Access to, and good working relationships with, key officials in the human rights unit of the foreign affairs ministry;
- Access to and influence with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president and/or prime minister;
- Agreement of the foreign affairs ministry to take up and act on each case that you bring to its attention;
- Taking the lead role on a particular country/human rights issue in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3) *Membership action*.

Governments are generally responsive to pressure from the community. You must therefore

develop a strategy to involve your members or supporters effectively and provide them with the resources to act.

- Organise letter-writing by members and other organisations to targeted members of the government or elected representatives on selected issues.
- Make sure your members seek meetings with their elected representatives to convey concern as constituents. Target particular influential representatives and members of the government.
- Hold campaigning events such as public meetings and protests in the constituency/home area of elected representatives.
- Ask members to write to the media.
- Involve the membership in public protests.

# 4) Lobbying officials.

A visit to the office of a decision-maker is often a good way to establish contact and put across your message. Contact the office by sending a formal letter requesting an appointment. The people who will make up the delegation should sign the letter. Be sure to confirm the appointment by phone, check the address, time and directions to the venue. If you do not receive a reply to the letter, telephone or visit the office to request an appointment once more, or use contacts who may help you gain access to the official. Things to consider:

- Plan your delegation carefully the more constituencies your delegation represents, the better you will be able to put across all the facts and opinions necessary to influence the decision maker.
- Delegate different tasks to each member of the team and appoint one leader who will introduce everyone and guide the meeting.
- Plan the arguments you want to put across, practise saying them, think of questions or counter-arguments you will be given and plan how you will respond.
- Say specifically what you would like the decision-maker to do (e.g. adopt new legislation, ask a question in parliament, change a policy, speak to the Cabinet, etc.).
- Leave a statement and a pack of material behind which summarises your arguments and include your contact details.
- Use the time well often half the meeting can be used for introductions and other issues, and the delegation gets distracted from making its point.

# 4. Tips for Successful Lobbyists

- 1) Establish yourself as a resource for policy makers by supplying them with information newsletters, research papers, publications and the outcome of research.
- 2) Express your willingness to help them find additional material or data.
- 3) Maintain your relationship with the policy maker by sending them information, thanking them when they voted appropriately on the issue you are concerned about and inviting them to events.
- 4) Encourage people to write personal letters to the policy maker and send copies of these letters to the press.
- 5) Organize a briefing for the policy makers at which an expert on the issue can talk about its importance.

# UN 경제사회 이사회 자문기관인 NGO 가 인권개선을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잭 랜들러 /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북한 전담관

# I. 협의 지위와 그 특권

- 1. 목적, 수행의무, 가치관, 핵심가치 및 기본원칙들에 대한 정의
  - 1) 개인과 기관을 위한
  - 2) 대중과 언론을 위한
  - 3) 기부자를 위한

2. 목표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피하라

3. 제네바와 뉴욕

4.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특권과 책임들 (출처: 유엔의 NGO 관련 자료)

- NGO 협의 지위에는 포괄, 특별, 등록의 3 가지가 있는데 새롭게 승인이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특정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 2) 협의 지위는 NGO 들에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부속기구, UN 의 다양한 인권체제, 휴대용 병기에 대한 특정 절차, 유엔 총회의 회장에 의해 조직된 기념행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UN News and Events'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NGO 의 참가를 위한 준비는 매 회의 시마다 다르고 각 행사의 주최자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것은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UN 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효한 내부
  - 통행증을 지녀야 하고 인증된 NGO 로부터 승인 받아야 합니다.
- 3) 유엔 비정부기구인 '유엔 경제사회국'은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지위에 있는 유엔 비정부단체 사무국 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NGO 지원에 있어서는 일에 대한 적절한 방법과 UN 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고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 69 | 유럽연합-한국 인권담화: 서유럽, 동유럽과 그 너머에서 인권을 증진한 경험

CSONet(시민사회네트워크)를 통한 컨퍼런스 등록, 국제연합본부에서 발생하는 정부간의 절차에 NGO 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 외에도 기술을 지원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한되어있는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 4) UN 의 안내책자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의 활동-NGO 의 협의지위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 5) 유엔 온라인 데이터 서비스에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 지위에 있는 모든 NGO 들을 구분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6) 포괄 협의지위와 특별 협의지위의 NGO 들은 매 4 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정부기구 위원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공정한 지역대표제를 기반으로 선출된 19 명의 멤버로 구성됩니다.

# II. 한국 내 인권관련 유엔 부속기구들 (출처: UN 문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무소는 유엔 체계 내에서 각기 다른 인권문제의 모니터링을 위해 최상의 전문지식과 지원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

유엔인권위원회와 그 부속 기구들은 국제 인권협약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국가의 조약상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독자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2. 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에 걸쳐 인권에 대한 증진와 인권보호를 강화 및 인권침해 사례 보고의 의무가 있는 유엔 체제 산하의 초국가적 기구이다.

모든 주제와 관련된 인권 문제와 이에 대한 관심을 연중 이끌어 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는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사무소의 입장과 일치한다.

- 위원회는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 47 개의 유엔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인권위원회는
   이전의 국제인권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이다.
- 2011 년 6 월 20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지역별 인권위원회 현재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 국가들

# 라틴 및 카리브 연안 국가들

	2013	Chile		2014
	2014	Costa	Rica	2014
	2014	Cuba		2012
Faso	2014	Ecuador		2013
	2012	Guatemala		2013
	2014	Mexico		2012
	2012	Peru		2014
	2013	Uruguay 2012		
	2013			
	2012			
	2012			
	2012			
	Faso	2014 2014 Faso 2014 2012 2014 2012 2013 2013 2012 2012 2012	2013       Chile         2014       Costa         2014       Cuba         Faso       2014       Ecuador         2012       Guatemala         2014       Mexico         2012       Peru         2013       Uruguay 2012         2012       2012         2012       2012	2014       Costa       Rica         2014       Cuba       -         Faso       2014       Ecuador       -         2012       Guatemala       -       -         2014       Mexico       -       -         2012       Peru       -       -       -         2013       Uruguay 2012       -       -       -         2012       -       -       -       -       -

아시아 국가

# 서유럽 및 기타 국가들

Bangladesh		2012	Austria	2014
China		2012	Belgium	2012
India		2014	Italy	2014
Indonesia		2014	Norway	2012
Jordan		2012	Spain	2013
Kuwait		2014	Switzerland	2013
Kyrgyzstan		2012	United States 2012	
Malaysia		2013		
Maldives		2013		
Philippines		2014		
Qatar		2013		
Saudi	Arabia	2012		
Thailand 2013				

# 동유럽 국가들

Czech	Republic		2014
Hungary			2012
Poland			2013
Republic	of	Moldova	2013
Romania			2014
Russian Federa	tion 201	12	

**3.** 유엔인권이사회는 매 4 년에 한번씩 모든 192개 유엔 회원국의 인권보고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는 독특한 과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보호의 의무와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약속한 각 국가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의 후원 하에 있는 국가주도의 과정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상황 평가에 있어 반드시 각 국가에 동일한 대우를 보장한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전 지구적인) 대응기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 유엔인권이사회(총14 번의 세션 중) 첫 번째 세션을 위한 잠정적인 스케쥴 표

		onday October				Thursday 25 October	Friday 26 October		
1 <sup>st</sup> w	9:00– 12:30	Review of Czech Republic	9:00– 12:30	Review of Gabon	9:00– 12:30	ReviewofPeruCzechRepublic에대한보고서배포	9: 00 - 12: 30	Review of Benin Gabon 에 대한 보고서 배포	UN
e k	14:30 - 18:00	Review of Argenti na	14:30– 18:00	Review of Ghana	14:30– 18:00	Review of Guatemala Argentina 에 대한 보고서 배포	14: 30 - 18: 00	ReviewofRepublicofKorea//Ghana//대한 보고서배포	휴일

# 둘째주

		onday October	Tuesday 30 October		Wednesday 31 October		Thursday 1 November			riday wember
2 <sup>nd</sup>	9:00– 12:30	Review of Switzerla nd	9:00– 12:30	ReviewofPakistan에Benin에대한+보고서+배포+	10:00 - 11:30	Benin,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 d 에 대한 보고서 통과	9:00– 12:30	Review of Ukraine Pakistan 에 대한 보고서 비/포		
W e k	15:00 - 18:00	Czech Republic, Argentina , Gabon, Ghana, Peru and Guatemal a 에 대한 보고서 통과	14:30 - 18:00	Review of Zambia Republic of Korea 에 대한 보고서 배포	14:30 - 18:00	Review of Japan	14:30 - 18:00	Review of Sri Lanka Zambia 에 대한 보고서 배포	15: 00– 18: 00	Pakista n, Zambi a and Japan 에 대한 보고서 통과

## 4. 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

특별절차란 전세계의 모든 문제에 관한 특정지역 혹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이슈를 보고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의해 인정되는 대응기제를 칭하는 용어다.

현재, 35 개의 특정 주제들과 10 개국 권한국이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 그들 권한국 들과 계약한 인적, 정치적, 학술적 지원, 군수지원을 위한 대응기제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양한 활동들은 개별적인 항의에의 대응을 포함하여 연구수행, 각 국가와 기술적 협력을 위한 조언을 지원하고 일반적 홍보활동 전개하는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절차는 각 지역에 할당된 '특별조사위원'이나 '독자적인 전문가'라는 일개인으로서 일하는 조사관 혹은 5 인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활동한다.

특별절차의 이행에 대한 권한 위임 받은 자는 개인의 능력을 제공하며, 그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급여나 어떠한 재정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다.

권한 위임 받은 자가 그들의 역할을 공평히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신분유지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특별절차는 인권침해관련 특정 혐의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 정부기관에 해당 혐의에 대한 서한을 보내거나 시급히 호소한다.

## 2) One of ten country mandates:

	위	임 제정	우	임연장	위임	
제목/위임	년도	결정자	년도	결정자	결정자의	연락처
	- 근포	201	근포	2'6'Al	이름과 국적	
북한의	2004	인권결의	2011	인권이사	Mr. Marzuki	hr-
인권사항에		안에 관한		회 결의안	<b>DARUSMAN</b> ( <i>인도네시아</i> )	dprk@ohchr .org
대한		위원회		16/8		C
특별보고관		2004/13		( <i>일년동안</i> )		
(Special						
Rapporteur)						

# 3) Nine of 35 thematic mandates:

독단적	1991	인권결의안에	1997	인권결의	Mr. El Hadji	wgad@ohc
구금해결		관한 위원회		안에 관한	MalickSOW(Senegal)	hr.org
위원회		1991/42		위원회	Chair-Rapporteur	
				1997/50		
강요된 실종방지 위원회	1980	인권결의안에 관한 위원회 20 (XXXVI)	2007	인권이사 회 결의안 7/12	Mr. Jeremy SARKIN (South Africa) Chair- Rapporteur Mr. Ariel DULITZKY (Argentina/United States of America) Ms. Jazminka DZUMHUR (Bosnia and Herzegovina) Mr. Olivier de FROUVILLE (France) Mr. Osman EL- HAJJE (Lebanon)	wgeid@ ohchr.org
독단적 사형에	1982	인권결의안에		인권이사	Mr. Christof HEYNS	eje@ohchr. org
대한 특별		관한 위원회	2008	회 결의안	(South Africa)	
리포터 (Special Rapporteur)		1982/35		17/5		
식량	2000	인권결의안에	2010	인권이사	Mr. Olivier de SCHUTTER	srfood@ohc hr.org
권리에대한		관한 위원회		회 결의안	(Belgium)	111.01g
특별 리포터 (Special Rapporteur)		2000/10		13/4		
평화적 집회의	2010	인권이사회			Mr. Maina KIAI (Kenya)	freeassembl y@ohchr.or
자유권리에		결의안			(кепуи)	g g
대한 특별 리포터(Special Rapporteur)		15/21				

표현의 자유	1993	인권결의안에	2008	인권이사	Mr. Frank LA	
보호와 증진에		관한 위원회		회 결의안	<b>RUE</b> (Guatemala)	chr.org
대한 특별		1993/45		7/36		
리포터		1993/43		//30		
(Special Rapporteur)						
종교와 믿음	1986	인권결의안에	2010	인권이사	Mr. Heiner	freedomofre
자유에대한		관한 위원회		회 결의안	<b>BIELEFELDT</b> (Germany)	ligion@ohc hr.org
특별 리포터		10000				0
		1986/20		14/11		
(Special Rapporteur)						
이민의 인권에	1999	인권결의안에	2008	인권이사	Mr. François	migrant@o
대한 특별		관한 위원회		회 결의안	<b>CREPEAU</b> ( <i>Canada</i> )	hchr.org
리포터						
		1999/44		8/10		
(Special Rapporteur)						
고문, 잔혹하고	1985	인권결의안에	2008	인권이사	Mr. Juan	sr-
비인간적인		관한 위원회		회 결의안	<b>MENDEZ</b> (Argentina)	torture@oh chr.org
처벌에 대한		1095/22		0/0		č
특별 리포터		1985/33		8/8		
(Special Rapporteur)						

## 4) 연락(소통)방법

일부 특별절차 대응기제는 권한자 (특별절차의 이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이 접하게 되는 인권침해의 특정혐의 등의 조사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이러한 개입은 이미 발생된, 앞으로 발생할 그리고 발생위험도가 높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그 과정은 해당국가에 관련 정보 요청 서한을 발송,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 향후 예방 권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다. 소통은 개별적인 사례들,특정국가에서 자행 되고 있는 일반적인 인권침해의 경향과 반복이나 어떤 국가의 법률 제정이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를 다룰 수도 있다. 사건 개입에 대한 결정은 특별과정의 권한위임자의 자율재량에 맡기고 정해진 다양한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판단기준에는 제공받은 정보와 세부사항 출처의 신뢰도와 확실성, 위임자의 조사활동 범위 등이 일반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그러나, 각기 다른 개별적인 항의에 대처하는 판단기준과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별 과정이 제정한 특정한 요구에 대해 소통을 해야 한다.

#### 5) 자료 제출하는 방법

a) 개별적인 사례들의 경우에 있어, 자료 평가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 피해자의 신원 확인
- (알려진게 있다면) 가해자의 신원 확인
-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원보호
- 사건 발생 일자
-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대한 설명

b) 관련된 특정위임자들은 주장된 침해에 대한 지시와 연관된 기타 세부 정보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희생자의 과거와 현재의 구금장소, 피해자가 받은 진단서, 목격자의 신원 확인, 현지에서의 시정에 대한 요구을 위한 어떠한 방책들, 등등)

c) 욕설이나 명백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띄는 듯한 서한은 고려되지 않는다.

서한은 사건에 대한 사실과 간결하고 명확하게 위에서 언급한 관련 세부사항만을 말해야만 한다. 언론의 보고서에만 바탕을 두고 서한을 발송 하면 안 된다.

d) 피해자와 정보출처의 보호

특별절차의 이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이나 유엔 모두 개인의 안전을 위해 그들이 직접 개입할 수 없음을 숙지해야 한다. 서한을 보내고, 유엔인권이사회의 각 회의(5월,6월, 9 월)에 제출할 보고서를 발간할 때까지 각 국가가 받은 답변의 기밀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려했던 사항들을 포함하고 적절한 상황에 특별절차의 이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은 미리 언론과 대중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관계당국이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름은 해당 국가로 발송할 서한에 보통 포함된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변안전에 대한 걱정들이 없으면 이 피해자들의 이름들은 보고서에 사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안서를 작성하는 개개인은 그들이 제출하는 자료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명시하길 원하는 지, 아니면 출판 시 기타 세부정보의 표기를 원하지 않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자료 출처에 대해 항시 비밀로 하며, 정부기관에 발송되는 자료나 다른 공식보고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 설문사항: 보고한 침해 사례를 쉽게 검토하기 위해 담당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피해대상에게 설문이 가능해야 한다. 설문사항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출하신 서한은 고려된다.

특별절차의 이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의 독자적 진행과정과 관련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 담당자나 유엔 웹사이트에서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절차 이행에 있어서 기한 내에 자료를 발송하기 위해서 영어, 불어, 서반어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우대) 하나의 언어로 번역된 자료는 원본과 함께 동봉시 우대합니다.

f) 침해 사례 제출 관련 각 담당자들이 제시한 요건에 대한 자문 후,

자료 전송은 +41 22 917 90 06(팩스), urgent-action@ohchr.org(이메일) 및 아래의 주소로 우편발송 하면 됩니다.

#### OHCHR-UNOG

8-14 Avenue de la Paix 1211 Geneva 10 Switzerland

우편봉투의 겉 표지, 이메일, 팩스 등의 제목란에 special procedure mechanism the information 임을 명시하라.

g) 위에 언급된 이메일 주소(**urgent-action@ohchr.org**)로 special procedures 에 도움이 될 만한 관련 사례를 알고 계신 개인이나 단체께서는 사례수집을 위해 연락 주십시오.

다음과 사례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구금된 개인의 석방, 새로운 법원 판결, 관련 당국 의 개선책.

#### 5. 뉴욕과 제네바의 각국 대표부

1) 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 in New York:

820 Second Avenue, 13th Floor New York, NY 10017 USA

+1.212.972.3105

- 2) Permanent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 of in Geneva:

   1, chemin de Plonjon
   1207 Geneva
   Switzerland
   +22.735.4370
-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UN in NYC: 350 East 35th Street, New York, NY 10016 USA http://www.china-un.org/eng/ Email : chinamission\_un@mfa.gov.cn
- 4) Permanent 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the UN, Geneva: 11, chemin de Surville 1213 Petit-Lancy Geneva Switzerland

# III. 영향력을 위한 방법과 수단(출처: 앰네스티 인터네셔널)

1. 로비활동은 종종 비밀리에 조용히 진행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수법일 뿐입니다.

보통 정부 기관이 그런 조용한 협상들을 진지하게 듣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캠페인 방법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로비활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대사관이나 시내 및 관할 지역 사무실에서 시내의 정부 관리자들을 방문하거나 회의를 합니다.
- 2) 정부간의 회의에서 정부 관리자들과의 회의입니다. (예: 국제연합회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담, 영연방 모임)
- 3) 정부 관리자들을 위해 계획된 여행이나 소풍 입니다.
- 4) 편지, 청원서 및 의사 결정자들과 접촉하는 다른 형태의 방법입니다.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이 왜 중요합니까?

- 1) 정부기관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정치가들은 여론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끌어갑니다.
- 3) 정부기관은 다른 정부 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4) 정부기관들은 정부간 국제기구의 행동을 구성하고 결정합니다.
- 5) 정부기관들은 국제인권기준과 그 방법을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 6) 정부기관은 입법과 실천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 2. 로비의 대상은 누구 입니까?

1) 조사와 분석입니다.

전략을 강화시키기 위한 출발점은 현재 처해있는 상황,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활용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입니다. 2) 질문입니다.

당신이 로비하고 있는 정부기관이 다른 국제인권조약에 서명하고 승인했습니까?

정부기관이 국제인권문제에 관련된 명확한 정책언명과 약속을 했습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의회의 정밀조사나 다른 공식적인 감시 메커니즘들이 있습니까?

인권 및 외국/무역/국방체제 정책과 연관된 독립적인 조사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메커니즘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대응기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일반적으로 정책성립과 특정국가 및 이슈와 관련된 인권단체들의 활동들을 위한 공식적인 메커니즘들이 있습니까?

정부기관은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다른 나라들과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인 유대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 국가들 내의 영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당신의 정부기관을 대변합니까?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세계은행,지역별 정부간 국제기구를 대변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장관, 부서 그리고 이익단체들이 외교정책(또는 다른 관련된)공식화와 특정국가나 이슈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들에게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정당 내에서 누가 외교정책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대중매체는 외교나 무역정책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언론은 대외교역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가?

대중매체는 일부 국가 혹은 이슈와 관련하여 더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 $81_{\parallel$ 유럽연합-한국 인권담화: 서유럽, 동유럽과 그 너머에서 인권을 증진한 경험

일부 대중매체나 기자들은 정책에 있어 더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판사, 교수, 작가, TV 패널들과 같은 특정 개인들은 다른 이들보다 정책에 더 지대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외무부는 어떻게 조직화 되었습니까?

특정 국가 및 주제를 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합니까?

인권연합과 같이 국제관계 내에서 인권에 대한 제도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까?

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합니까?

군사적 혹은 경제적으로 연관된 인권 고려사항에 대한 특정법이 있습니까?

다른 비정부기구들처럼, 대외정책에 있어 인권통합이 지지를 받을 만한 광범위한 선거구가 있습니까?

## 3. 로비하는 방법 입니다.

1) 로비활동의 실용성

인권을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해 권력과 영향력으로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은 다양한 기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회원활동, 제 3 자와 미디어 홍보 또는 외무장관과의 차 한잔의 담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장기적인 관점에서,성공은 아래의 사항들에 의해 달라집니다.

2) 목표를 지정 하십시오.

로비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표는 인권보호와 홍보가 정부 국제관계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 북한 인권문제, UN 과 국제사회를 통한 해법 논의 $\mid 82$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다른 단기적인 목적들은 현재상황에 대한 당신의 분석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교정책과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의 전개입니다.
-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한 선출된 대표들 및 정당과의 접촉 전진입니다.
- 인권에 대한 정부 활동의 독립적인 연례 검토 확립입니다.
- 원활한 업무 관계 유지와 함께 외교부 인권 기구의 주요관리자들에 대한 접근입니다. .
- 외교부장관, 대통령 및 총리에 대한 영향력과 접근입니다.
- 외교부가 관심을 이끄는 사건을 조사하고 대처하는것을 동의하도록 만들라.
- 국제조직안의 특정국가나 인권관련 이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3) 회원 활동 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은 지역사회의 압박에 즉각적으로 반응 한다. 그러므로, 회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고, 활동에 필요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특정 이슈에 관해서 정부기관 관계자나 선출된 대표(해당지역 국회의원 같은)를
   타겟으로 하여 회원 및 기타 단체들이 주도로 서면청원 활동을 구상하라.
- 회원들은 유권자(지역주민)으로써 느낀 문제들을 선출된 지역구 대표와 함께 논의할 소통의 장을 마련하라. (논의를 함께할 대상은) 특정 영향력이 있는 대표나 정부관계자로 하라.
- 지역구 대표가 선출된 해당 선거구에서 대중집회나 시위를 열어라.
- 회원들에게 언론에 기사를 작성하고 보내도록 요청하라.
- 회원들을 시위에 참가시켜라.

4) Lobbying officials.

종종 연락망을 공고히 작성하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정책결정권자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사무실에 공식 서한을 보내 약속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 하라. 조직의 대표들로 이루어질 사람들은 서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약속장소에 관한 주소, 시간, 가는 법 등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라.

당신이 보낸 서한의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엔, 유선이나 방문을 통하여 한번 더 미팅약속을 잡아라. 또는 담당자를 접촉할 수 있도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연락을 취하도록 하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대표선출에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들의 대표가 선거구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정책결정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실과 의견을 이해시키기 수월하게 될 것이다.
- 팀의 각 구성원들에게 다른 업무를 위임하고 대중에게 모든 구성원들을 소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한 명의 리더를 임명하라.
- 당신들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논의를 계획하고, 그에 대한 연설하는 법을 연습하고,
   당신들이 받게 될 반대입장의 주장을 예상하여, 이에 답변할 계획을 세워라.
- 정책 결정권자가 행하길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예를 들어, 새 법안 채택, 의회에 청원, 정책 변경, 내각을 대상으로 한 연설 등등)
- 당신의 논점을 요약한 성명서와 자료들을 연락처와 함께 남겨라,
- 시간 활용을 잘하라- 불필요할 수도 있는 소개와 다른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것은 미팅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대표단들이 그들의 목표에 집중할 수 없다.

### 4. 성공적인 로비활동가들을 위한 조언들

- 정책결정자들에게 유익한 출처가 되기 위해 신문, 조사, 논문, 출판물 및 기타의 연구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정책결정자들에게 제공하라.
- 2) 추가적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꺼이 협조할 수 있음을 알려라

- 3) 정보 전송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와의 관계유지에 힘써라. 당신이 고려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그들이 투표하여 지지해 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그들을 초대하라.
- 4) 정책결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청원을 하도록 이들을 독려하고 서면청원의 복사본을 언론에 보내라.
- 5)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을 전문가가 해당이슈의 중대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구상하라.

# <MEMO>

<토 론>

#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기대하며

김영일 /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대표

# Ⅰ. 발제에 대한 언급

■ 알리스데어 워커(Alisdair Walder)에게

- 질문 & 제언

영국정부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적 의자가 분명한 점과 북한인권문제의 관심에 대해 북한출신으로서 감사 드린다. 발제문에서 영국정부는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을 통해 북한당국에 정기적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얘기하였고 그에 따른 북한당국의 반응은 있었는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북한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외무부 인권과에서 근무할 때 고문방지를 위해 고문 사례들을 적절히 기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고 구쏘련이나 중앙아시아 중동 등에 적용했다고 하였다. 한편 다른 페이지에서는 고문방지를 위한 접근방법은 나라별로 달라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고문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틀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잭 랜들러(Jack Rendler)에게

- 질문 & 제언

포괄적 협의 지위를 가진 NGO들이 어떤 방식으로 UN에 접촉하고 일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하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인권탄압사례를 UN에 근거자료로 제시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뿐만 아니라 UN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 피해자가 인터뷰에 응해줘야 한다는 부분 등은 좋은 정보인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실상을 들여다 봤을 때 정말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문제는 외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로 다른 민족이나 종교집단의

충돌로서 발생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절대다수의 인권탄압사례는 정부당국자들이 직접 자행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그 밖의 폭력사건이나 인권 유린은 북한을 장악한 독재자들이 만든 시스템이나 제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UN이 요구하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또 UN이 북한당국에 인권탄압 자료를 가해자인 북한당국에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여 과연 얼마나 큰 성과를 볼지 의문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 활동들이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외부의 눈치를 보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주민들은 계속 인권유린을 공권력에 의해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Jack Rendler 씨는 엠네스티에서 아주 많은 경험을 하신 분 같은데 이러한 북한체제에 대해 대응할 만한 좋은 방안이 없겠는가?

#### Ⅱ.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기대하며

1.들어가며

지금 이미지는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할 때 마을이나 학교 등에 붙이는 '포고문'이다. 과거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이 포고문을 직접 보았고 공개처형 현장도 지켜 봤다. 나의 고향에서 일어났던 공개처형이었는데 한국에 오니 누군가가 포고문을 이렇게 사진에 담아 왔다. 사실 이렇게 증거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1990년대는 함경남도 함흥이라는 지역에서 공개처형이 가장 많이 진행됐었다. 공개처형은 보통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터나 다리 밑에서 진행하곤 하였다. 당시 목격했던 공개처형방식은 총살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수형이었다. 사형수들의 입에는 자갈이 물려져 있었고 북한의 경찰(예전에는 '안전원'이라고 불리었으나 지금은 '보안원'이라고 함)들은 일방적으로 그들의 죄명을 공개하였다. '술을 먹고 부모를 구타한 것', '경찰주택에서 도둑질 한 것', '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훔친 것', '전기선을 절단 한 것' 등이다. 여기 사진에 있는 주순남도 당시 술을 먹고 주변사람들을 구타해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총살형 당했다. 총살형들은 현장에서 죄인의 눈, 잎, 팔다리 모두를 결박하고 변호사의 변론도 없이 사형은 언도되곤 하였다.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당연히 변호사 따위는 필요도 없이 당국에서 죽을 죄라고 하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줄 만 알았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 따위에는 큰 흔들림 없이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토론주제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의 더 큰 관심과 개입을 바란다는 의미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 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그 자체로서 참으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황은 좀처럼 낳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같은 수위의 관심과 개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는 좀 더 강력하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

#### 2. 본론

2005년부터 매해 말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해가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결의안에 동참하고 있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안보리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당연히 북한당국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유엔이 지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안보리 결의안도 북한당국이 번번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월 13일 소위 '은하3호'로 명명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도 2006년 UN 안보리에서 결의한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미사일 실험에 따른 제재의사를 밝히자 이번에는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결국 의장성명이 발표되고 북한당국은 의장성명을 강력히 배격하며 제3차 핵실험 실시 의지를 재천명했다. 결국 국제사회는 벼랑 끝으로 치닫는 북한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 동안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며 스스로 고립되어 오던 북한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약제조, 위조지폐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였지만 국제 규범을 어긴 대가로 많은 제재를 받아왔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제재를 받을 만큼 받은 북한에게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또 그 제재가 북한당국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제사회의 이런 방식의 북한 컨트롤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따져봐야 한다. 물론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당국에게 전혀 아무렇지 않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북한당국자들도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고 지속적이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국제사회 또한 북한이 열린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국제적 규범인 자유와 인권을 주민들에게 보장하라고 요구한다. 북한 당국자들만 선택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만 현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쉽게 선택할 수 없게 한다.

그 제약요소는 다음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김일성 사후 북한주민들의 맹목적 충성심은 거의 사라졌다. 때문에 개혁개방을 하여 개인들의 사유재산이 증가하면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절대권력에 저항할 것이다. 둘째, 3대 세습을 하면서 행한 정치적 탄압들은 시한폭탄처럼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개혁개방으로 외부 정보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좀 더 자유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의 불만은 다양한 저항 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다. 셋째, 북한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김씨 일가는 북한의 부를 독차지 하고 있다. 개혁개방은 이러한 절대적 독점권을 양도하게 하는데 이 또한 독재자의 용기와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대외적으로 북-중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등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가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앞서 말한 북한의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북한의 대외적인 정책들에 그대로 반영된다. 체제가 계속 유지되려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만한 대외적인 충격이 주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로부터 가해지는 일정수준의 압박은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활용할 가치도 있다고 본다. 주민들에게 있어 북한이 가난한 이유는 대국들의 간섭 때문이고 그래서 더 허리띠를 졸라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선동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언론을 장학하고 있고 외부소식을 철저하게 차단하였기에 이러한 정치선동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북한이 저지른 도발은 북한내부에서 외부의 공격에 대응한 북한의 자의적 조치로 선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문제를 새롭게 풀어야 한다.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제재는 그 동안 북한이 너무도 많이 받아왔기에 큰 효과가 없다. 이러한 제재는 내부 불만을 잠재울 정치적 선동의 도구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국들은 당장 자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군사문제에만 너무 치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 내부에 있다. 북한내부에서 독재세력을 견제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기에 북한당국은 무모한 도발을 하게 되고 이 도발은 다시 내부 결속에 이용된다. 여기서 UN안보리를 통한 북한문제 해결을 한번 짚어보자. 그 동안 계속 반복 되어온 문제이지만 역시 안보리는 구조적 문제와 기능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고 해도 상임이사국 1개 국이라도 거부를 하면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기간 안보리가 열릴 때마다 반복되어 오던 문제이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대국들 사이에 있기에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다. 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북한문제를 다룬다. 어떻게 보면 북한을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것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다.

#### 3. 맺으며

서두와 본론에서 국제사회의 북한문제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렇다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지역 출신으로 하루 빨리 긍정적인 변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니 너그럽게 받아주길 바란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 북한주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전래에 없는 탄압과 통제를 해오고 있다. 북한 내부에 자생적인 민주주의 싹이 만들어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역할은 북한내부에서 이러한 싹들이 생겨날 수 있게 북한의 생리를 좀 더 올바로 파악하고 대북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북한 사회가 자유로워지면 북한에서도 자생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군사문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북한을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UN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는 일정부분만 효과를 보고 있다. 북한당국에 자극이 되어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당국이 필요로 한 정치적 선동의 소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국제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면 북한의 인권탄압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 북한문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한국정부와 정치권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 동안 북한인권문제를 다뤄온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정부와 시민사회를 향한 북한인권 개선 동참을 호소하고 설득해야 한다.

# 성통만사의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 제시된 발표자들의 전략을 기준으로

남바다 /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사무국장

세르비아에서 저희 워크샵을 위해 방문해 주신 Sinisa 님의 이야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인권개선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유머를 활용해서 정권을 비웃는다거나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 등은 진지하게만 북한인권 활동에 접근하는 저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해 주셨습니다.

#### I. 발제에 대한 언급

1. 알리스다 워커(Alisdair Walder)님께

영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나니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로써 훨씬 든든한 마음입니다. 특히 영국과 영국 대사관은 탈북자 지원이나 탈북자 영어교육에도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충실히 진행해 주시고 계시어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통만사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들 중 몇 명은 영국대사관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이 매우 높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외국을 대표하는 대사관의 입장에서, PSCORE 와 같은 NGO 가 한국 내에 있는 각국 대사관에 북한인권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급해 주신 고문에 대한 handbook 은 북한인권 침해사실을 조사하는 성통만사나 NKDB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어는 없다고 하지만 영국대사관에서 별도의 워크샵을 통해 기록과 인터뷰 기술의 전수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2. 잭 랜들러(Jack Rendler)님께

제시해 주신 여러 방법들 중에는 당장 성통만사나 북한인권 단체들이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제네바의 한국 대표부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 했으며, 외교통상부의 인권부서와도 본 워크샵 이후에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이 국회의원이 되신 조명철 박사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과 연결들이 모여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성통만사가 제작한 자료들 중에 정책결정자들이 참조할 만한 좋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배포 당시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던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나서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통만사가 구글맵 프로젝트 등을 통해 축적하고 있는 북한인권 침해사례 정보들이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한 북한인권 침해의 문제제기에 도움이 되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성통만사가 작성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UN 에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UN 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 할 때 영향력 있는 보고서가 될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통만사는 9 월에 제네바 UN 인권위원회에 방문할 예정이지만 이미 북한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3 월에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UN 인권위원회에 처음 참가하는 단체로써 10 여명의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제네바에 방문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Ⅱ. 성통만사의 SWOT 분석에 따른 전략 – 제시된 발표자들의 전략을 기준으로

1.起-일어날기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NGO 들은 사람들의 편견과 빈약한 지원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펼쳐 왔으며 그 중에서 저희 성통만사-PSCORE 도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워크샵은 성통만사와 같은 북한인권 NGO들이 보다 국제적인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널리 알리고 다른 국가들과 UN 시스템을 통해 북한에 인권의 개선을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느리지만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통만사를 기준으로 북한인권 단체가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분석과 제안에 나서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NGO의 시각이 아닌 경영분석적 측면에서 외부의 컨설턴트들이 성통만사를 평가 한다면 어떻게 평가할지를 기준으로 삼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활용할 SWOT 분석은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의 머리글자를 모아 만든 단어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도구입니다. 내적인 면을 분석하는 강점/약점 분석과, 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기회/위협 분석으로 나누기도 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영자는 회사가 처한 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고 앞으로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분석 툴입니다.

이 방법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 포춘지 선정 500 대 기업들을 연구하면서 얻게 된 결과를 바탕으로 고안해낸 내-외부환경 분석 방법의 하나입니다.

SWOT 분석법은 강점이 있고 커다란 기회가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한 분석에 유용한 도구이며, 약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위험을 식별하게 하고 내부와 외부의 위협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동안 NGO 들은 경영전략이나 기획수립 보다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전략적인 사고보다는 눈앞의 일들에 바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성통만사가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등록된 이상 성통만사가 조금 더 전략적인 방향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 2. 承.-이을 승 : 성통만사-PSCORE 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내적요인 : PSCORE 의 강점	– 내적요인 : PSCORE 의 약점
<ul> <li>UN ECOSOC consultative status: 북한인권 NGO 들 중 유일</li> <li>다년간의 탈북자 교육지원 프로그램 정착</li> <li>매년 여름이면 전 세계에서 인턴 신청자 쇄도 (2012 년 여름 60 여명)</li> <li>전 세계에 퍼져있는 예전 자원봉사자들과 인턴들</li> <li>다년간 쌓아온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 (동영상, 구글맵,통일의 이유 등)</li> <li>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의 참여할 기회 제공 가능</li> <li>인턴들의 85%는 외국인 혹은 한국계 외국인</li> </ul>	<ul> <li>취약한 정기후원자(개인 후원자) 기반</li> <li>매년 여러곳에 사업지원을 신청해서 단체 운영경비를 확보 해야 함</li> <li>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오랜 기간 함께 일하는 Staff이더 필요함</li> <li>국제사회에서 활동한 경험 부족,해외사업 진행할 전문가 부족</li> <li>체계적인 탈북자 교육지원 프로그램 기획 부족, 실행 인력 부족</li> <li>학술적인 접근보다는 실질적인 활동에 집중</li> </ul>
- 인턴들의 85%는 외국인 혹은 안국게 외국인 기회 (Opportunity)	위협 (Treat)
<ul> <li>- 외적환경 : 시장상황의 기회</li> <li>- UN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처음으로 표결 없이 통과됨 (2003 년부터 표결처리 통과됨)</li> <li>- 국내에서도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li> <li>- Kpop 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증가</li> <li>- 탈북자 북송문제 등에 대한 중국정부의 변화</li> <li>- 탈북자들의 꾸준한 유입으로 인한 사회 인식의 변화</li> <li>- 탈북자 최초의 국회 진출</li> <li>- 외국인들 중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기관은 극히 제한적</li> </ul>	- 외적환경 : 시장상황의 위혐 - 김정은의 정책변화가 북한내의 인권상황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 인권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음 - 아직까지 북한인권 문제는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중요한 이슈 - 한국 내에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 계층 존재, '간첩' 이슈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많음

2. 轉-구를 전 : 실행전략 <발표자들의 조언과 SWOT 분석을 믹스한 성통만사의 실행전략> 발표를 해 주신 외국의 사례들에 맞춰 성통만사의 SWOT 분석을 결합시키면 앞으로 어떤 활동 전략이 나올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SO – 기회를 강점으로 활용 (강화)	ST –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 활용 (보완)
-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북한인권 관련	- 북한 정권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실행하고
활동 마련 (외국인 인턴들의 적극적인 활용)	있지 않다는 사실을 꾸준히 홍보
- 예전 인턴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를	- 해외에서도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많은
구축하여 북한인권에 대해 활동하는 강력한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전 세계적 조직망 구축	안에도 알리는 작업이 필요
- 기존에 제작한 온라인 콘텐트들을 활용해 전	- 북한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세계적인 캠페인 진행	상황인지에 대한 대중적인 홍보에도 꾸준히
- UN 인권이사회와 국제사회에서 더욱	노력해야 함 — 부산국제영화제 캠페인 및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여수엑스포 캠페인
개발, 타 단체들과의 연계활동 추진	
- Facebook 과 Twitter 를 통한 북한의 인권상황	
홍보 강화	
WO – 약점을 극복하여 기회 활용 (보완)	WT – 위협을 피하고 약점을 최소화 (회피)
- 해외 Grant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하고	-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는 계층에 대한
꾸준한 노력	추가적인 홍보와 참여요청, 정기후원자 모집
-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기후원자	- 대한민국 해외 공관을 통해 국제적인 활동을
발굴,국회를 통한 노력 포함	진행하는데 있어 도움을 요청함
- 교육프로그램 기획과 같이, NGO 에서	- 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부족한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자원봉사자 요청, 특히 해외활동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요청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적극 활용
- UN 시스템이나 국제적 활동을 경험해본	
전문가를 초빙한 지속적인 강연과	
교육프로그램 실시	

4. 結-맺을 결

위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과 전략들과 오늘 발표해주신 Alisdair Walker 님과 Jack Rendler 님의 조언이 결합된다면 앞으로 성통만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성통만사의 외국인 인맥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한다면 생각보다 강력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통한 각 국가들에서의 로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Facebook 과 Twitter 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과 활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머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과 신격화 되고 있는 김일성 가족들에 대한 희화화도 시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웃고 놀리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잘못된 진실을 바로잡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라는 남북한 커뮤니티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과 관련된 단어와 개념들을 '통일'과 관련된 단어로 바꾸어 일반인들의 심리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남북문제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각성하고 노력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PSCORE 의 방향성을 고민하며, '인권'을 다시 묻다.

신수경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 1.들어가며

먼저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걱정이 됩니다. '북한'과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래도록 헌신해 오신 여기 계신 패널 여러분들과 달리, 저는 그저 어느 날 우연히 접한 뉴스에서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하기에, ⑱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얼마나 문제인지, 그리고 나 같은 일개 시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를 고민하는 마음 하나로 2010년 겨울, 성통만사에 문을 두드린 것이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북한 인권 운동가로서의 실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통찰력이라든가 북한의 실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 등이 많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신 아직 배우는 중에 있는 학생의 위치가 가져다줄 수 있는 특권 내지 면죄부를 십분 활용하여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에도 얽매이지 않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솔직하게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지점들을 발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성통만사'를 응원하고 아끼는 한 사람으로써 그러한 마음을 공유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체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에 있어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들까지도 함께 상상해 볼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 2.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은 누구의 인권, 어떤 인권인가?

사실 처음에 북한인권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악한 김정일 독재 정권의 그늘 아래 무참히 인권을 유린당하는 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상처, 그로인해 나약하고 무기력해져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된 북한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지자, 내가 직접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변'해야겠다는 어떤 정의감 내지 의협심에서 북한(여성) 연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성통만사에서 인턴 활동을 하면서 상상 속에서만 그려보던 '북한주민(인 적이 있었던 사람들: 북한이탈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이분들은 저의 예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상처가 있기도 했지만 담담하기도 했고 때론 슬퍼 보였지만 때론 명랑했습니다. 즉 남한 출신인 저 자신과 다르면서도 한편으론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재중 북한이탈주민은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또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조차 그다지 많이 만나보진 못했습니다만, 언론에서 비춰지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제 생각과는 너무도 다른 이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단순히 피해자의 형태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를 상정했던 제 자신의 선입견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의 삶, 상황은 이럴 것이다.' 라는 그 고정된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 시대의 수많은 인권논의와 담론들, 그리고 운동이야말로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세태와 경향들만큼이나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북한인권운동이 문제적이니 '인권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인권'을 외치는 다양한 목소리와 운동들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욕망' 이 무엇인지를 우리들 스스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좀 더 많은 이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인권' 문제는 고난의 행군(1994~) 이후 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국경 이탈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권문제는 이제 명실상부 국제 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논의 대상 중 하나입니다. 학계 역시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북한 인권을 포함한 인권 전반에 관한 이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수업을 청강하면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논의의 흐름을 읽을 수 있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크게 보편을 강조하는 '인권의 보편주의'와 차이를 강조하는 '문화 상대주의'라는 두 개의 가치가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된 두 개의 가치를 국제사회뿐만

<sup>&</sup>lt;sup>1</sup> 정태욱(2010)은 이와 관련하여, 북한 체제의 개혁과 인권 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이들의 선 이해 속에 북한에 대한 멸시와 자유주의에 대한 우월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북한에 대한 비판도 북한 주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지배 욕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리고 그러한 경멸과 타자화로는 어느 누구의 인권도 개선될 수 없으며,북한주민들의 인간성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예속과 굴종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와 진보 세력들마저도 고스란히 차용함으로써 지난한 논쟁을 통한 남남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두 논의들을 좀 더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보편적 인권'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이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고,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갖는다는 인권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인권운동을 하고 계시는 상당수의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에 서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이러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었고, 좀 더 진지하게 인권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많아진 지금까지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보편적 인권 개념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적 이점과 매력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확실히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보호담론'은 북한 인권문제를 고민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이들을 억압하는 북한독재정권을 비난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 그러한 주장에 대한 '공개적'인 반발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아주 편리합니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은폐된 많은 문제들 역시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너무 현학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곰곰이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인간 개개인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개인'은 지배집단/남성 엘리트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 기타 비주류 집단이 '인간'으로 인식된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최근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당연히 남녀노소 인종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인간이 인권의 주체에 해당될 것 같지만, 과연 진짜로 그렇습니까?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는 이론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현상적으로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까지도 특정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어느 누군가는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UN과 같이 국경을 초월하여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중립성을 표방하고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에서조차도 누군가의 고통은

다행히도(?)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열강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sup>&</sup>lt;sup>2</sup> 일다에 연재된 김고연주님의 '불쌍한 아이들 혹은 무서운 아이들' 인용

지점에서 UN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적 이점을 틈타 성통만사에서도 이번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포괄적 협의 지위 기구로써 활동할 기회를 획득하며, 최대한 UN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잭 랜들러님께서 제시해 주신 tip은 경제이사회의 NGO 협의 기구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준비 중에 있는 성통만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국제정치무대와 이를 주도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조차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우익 독재정부의 인권유린과 폭력적 방법의 사용을 용인 하는 식의 이중적 기준을 스스로 채택해 왔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인권문제는 운 좋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다른 인권 문제들은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언제든 북한인권문제도 그 궁극적인 해결 여부에 의해서가 아닌 정치적 맥락에 따라 세계무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단체가 UN과의 전략적 협력을 도모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파트너가 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며, 그렇기에 미국, 유럽 등의 서구세력 및 유엔과 일정 부분 협력하되 독자적으로, 때로는 다른 목소리로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성통만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통만사가 UN과의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도모하는 이 시점에 이런 맥 빠지는(?)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인턴을 하는 동안 성통만사에서 북한주민들에 효과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구상하는 것을 보고 조금 우려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편적 인권을 외치는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 또 북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도입되면 북한의 인권 문제 역시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인권운동과 김정은 정권 타도, 민주주의 실현 등을 동일 선상에서 바라보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면 인권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민주주의는 늘 누구에게나 가장 훌륭한 절대적인 가치입니까? 이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김정은 정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현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주장과는 다른 논리입니다.) 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도입 자체가 인권 향상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지역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며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새로운 계층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빈부격차의 확대와 정부의 관리능력 부족이 인플레와 실업을 양산시키고 사회 안정의 기조를 심각하게 흔들었던 경우를 우리는 이미 수 없이 확인했습니다.<sup>3</sup> 한편 민주주의의 대표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나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에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남한, 우리들 내부에서 조차도 한편에선 심각한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민주주의가 일면 독재정권의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치적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권운동의 최종 목표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교육받지 못한,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이식하겠다는 어떤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동력 삼아 인권운동을 한다면, 통일이 되더라도 사회주의 체제 이길 여전히 희망한다는 북한 주민들<sup>4</sup>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더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생각으로 인권 문제에 접근하고 개입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만일 김정은 정권과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과연 진정으로 이들의 인권 상황을 걱정하고 애정을 가지며 개입하려 들 것인지 솔직히 의심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특정 가치가 반드시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이라는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고, 특정 가치 그 자체가 아닌 실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와 목소리를 상상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나름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행위 주체이자 자신들 삶의 주인공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결여된 보편적 인권에의 외침은 그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sup>5</sup>

한편, '차이'를 강조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 내지 제3세계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이 개념은, 북한에서도 차용되어 '우리식 인권'이라는 개념을 발전 및 정당화 시키게끔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이야 고민할 것도 없이 북한의 우리식 인권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논리이며 말장난에 불과하다

<sup>&</sup>lt;sup>3</sup> 홍규덕(2002), '탈북여성 인권보호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대안 모색', 아시아여성연구 제 41 집.

<sup>&</sup>lt;sup>4</sup> 'KBS 스페셜 통일 대기획' 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 본 결과 '통일이 어떤 체제로 이뤄지길 바라냐?'는 질문을 중국 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59%는 사회주의, 41%는 중국식모델이라고 답했으며 단 2%만이 자본주의라고 대답하였다.

<sup>&</sup>lt;sup>5</sup> 한편, 그 기본적 권리라는 것은 과연 누구에 의해 정해진 어떤 권리를 의미합니까?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권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누구에게나 좋은 권리라는 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해 낸 것입니까? 단적인 예로 보편적 인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자유권은 인권이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인권이 아닌 그저 목적과 열망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반면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후자가 더욱 중요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글쎄요, 자유가 없이 혹은 경제적 권리가 없이 어느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양 측의 논리 모두 수궁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되고 있는 이 두 논리, 과연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여기시겠지만, 이것이 토대를 두고 있는 '문화 상대주의'라는 가치는 오늘날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편적 인권을 지지하는 세력만큼이나 많은 세력이 이 가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서구식 보편개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상대주의는 간단히 말해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각 문화는 그 문화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어떤 문화요인도 그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화에 대한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전 총리였던 리콴유는 이러한 문화상대주의적 이론을 근거로,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시아적 가치란 서구식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와는 구분되는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서구식 인권 개념을 아시아권 국가에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보편주의적 인권 개념이야 말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할 줄 모르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인식론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리콴유가 말하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것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한 국가 내지 집단 내부에서 모두에게 통용되는 고정 불변의 문화와 단일 가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만약 존재한다고 생각되어 왔다면, 그처럼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나 전통이라고 간주/인정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누구의 문화이며 전통입니까? 저는 이것들이 주로 남성/기득권 중심적인 문화이고 전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각 국가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라는 '문화 상대주의' 역시 그 국가 내부의 다양한 차이는 과감히 삭제시킴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들이 그토록 비판해 마지않는 보편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권운동'이란 사회적 약자에게 인권의 개념이 확대 적용되는 것을 넘어, 기존의 인권 개념을 문제시, 재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인권의 운동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정희진(2006)의 주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논의들이 다소 추상적이고 또 북한인권의 현실과 무관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더 복잡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인권에 관한 논의들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인권 운동을 하는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찰이 있을 때 비로소 단순하게 '정의'라는 대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복잡하고 모순적인 인간과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서로를 위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 3. 위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통만사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

(1) 북한 인권 운동을 넘어서 전체 인권 운동의 차원으로

- (2) 탈북자 인권에 머무는 것이 아닌, '여성'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 (3) 특정 정치적, 종교적 입장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활동하기 위한 재정적 독립의 중요성

(4) 국내적 기반인 동시에 국제적 기구로써의 양 이점을 적극 활용

# <2012 북한자유주간 국제워크샵> 자료집

# 유럽연합-한국 인권담화: 서유럽, 동유럽과 그 너머에서 인권을 증진한 경험

European-Korean Human Rights Dialogue: The experience of promoting human rights in Western Europe, Eastern Europe and beyond.

# 부제: 북한 인권문제, UN 과 국제사회를 통한 해법 논의

**발 행 인**: (사)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 위 인쇄물은 발행인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